



**【책임연구자】**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남북 보건복지 제도 및 협력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사업 네트워크 구조와 발전방안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공동연구진】**

노법래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모춘홍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김예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수시) 2019-03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점에서의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 연구**

발행일 2019년 12월

저자 조성은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 발간사 <<

2018년 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면서 높아졌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2019년에는 급속히 식어 버렸다. 국제관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늘 있어 왔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생각하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대한 것만큼 속도가 나지 않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만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기본 전제가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치로 발생하는 군사·안보 비용, 북한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저출산·고령사회가 지속되어서 사회·경제적으로 침체될 때 북한의 개혁·개방은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남북 모두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2010년을 전후하여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국제인권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그동안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했던 인권 영역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으며, 유엔 및 산하기구들과 공식적인 협력을 진행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발맞추어 정치적으로 경색된 국면에 비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교류·협력을 유지해 가는 것은 향후 남북 관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같은 민족으로서 북측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본원의 조성은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김예슬 연구원이 참여

했으며, 황안나 연구원, 윤지혜 행정인턴이 자료 수집을 도왔다. 이와 함께 세명대학교 노법래 교수, 한양대학교 모춘홍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이주영 박사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 연구가 쉽지 않은데, 참여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진 개인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며, 이 연구 보고서가 이후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 과정에 귀하게 쓰이길 바란다.

2019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 목 차

Abstract .....	1
요 약 .....	3
<b>제1장 서론 .....</b>	<b>7</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1
<b>제2장 북한의 유엔에 대한 태도와 교류·협력의 가능성 .....</b>	<b>13</b>
제1절 북한·유엔의 관계와 분석 방법 .....	15
제2절 북한 내 보도에서의 유엔 .....	19
제3절 분석의 함의 .....	35
<b>제3장 국제기구 대북 전략계획의 전개와 함의 .....</b>	<b>37</b>
제1절 유엔전략계획의 함의 배경 .....	39
제2절 유엔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	45
제3절 유엔전략계획과 북한의 변화 .....	53
<b>제4장 지속가능개발목표 관점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의 과제 .....</b>	<b>59</b>
제1절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추진 배경 .....	61
제2절 남북 교류·협력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관점에서의 주요 과제 .....	73
<b>제5장 결론 .....</b>	<b>85</b>

---

참고문헌 ..... 91

부록 ..... 99

## 표 목차

〈표 2-1〉 주제어 출현 빈도 상위 시기 .....	20
〈표 2-2〉 최다 출현 시기별 주요 북한 이슈와 기사문 예시 .....	21
〈표 2-3〉 토픽별 상위 주제어(발체) .....	24
〈표 2-4〉 토픽 분석 결과 요약 .....	26
〈표 2-5〉 토픽별 주요 기사문 .....	28
〈표 2-6〉 중앙방송·중앙통신의 유엔 보도 태도 .....	32
〈표 3-1〉 북한에서 유엔의 역할 .....	46
〈표 3-2〉 UNSF 2017-2021 전략 우선순위 및 성과 목표 .....	48
〈표 3-3〉 SDGs의 목표가 적용된 전략 우선순위 .....	49
〈표 4-1〉 SDG 17개 목표 .....	65
〈표 4-2〉 영유아 우선의 교류·협력 방안 .....	77
〈표 4-3〉 세계 영양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과제 .....	77
〈표 4-4〉 WHO 보건의료 부문 대북 지원 전략(2014-2019) 방향 개요 .....	80

---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구조 .....	12
[그림 2-1] '유엔' 관련 단어의 월별 노출 변화 .....	19
[그림 2-2] 토픽 분석 결과 .....	23
[그림 2-3] 중앙방송·중앙통신의 유엔 보도 태도의 시계열적 변화 .....	34
[그림 3-1] UNSF 2017~2021의 사업 내용 흐름도 .....	50

## 부록 목차

〈부표 1〉 SDGs를 위한 국제 지표 체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의 세부 목표 .....	100
〈부표 2〉 사회 분야 평가지표 .....	129
〈부표 3〉 환경 분야 평가지표 .....	132
〈부표 4〉 경제 분야 평가지표 .....	135

---

## Abstract <<

### **A Study on Inter-Korean Cooperation on Health and Welfa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roject Head: Cho, Sung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orth Korea's change of attitude towar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ited Nation and North Korea's position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Furthermore, this study derives exchange and cooperation plans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that are expected to be highly effective.

In order to analyze North Korea's attitude towar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ts position on the SDGs, we carried out literature review on reports published by North Korea and by UN agencies and conducted text analysis on the time series data form the Labor News 2005-2018.

In line with the UNSF 2017-2021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2021), agreed upon by North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food self-sufficiency for humanitarian cooperation should be promoted urgently to resolve hunger and malnutrition in vulnerable groups such as infants, children, women and the elderly.

---

Co-Researchers: Rho, Boeprae · Mo, Chunheung · Lee, Jooyoung · Kim, Yeseul

## 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점에서의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 연구

The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goes beyond humanitarian assistance. This study proposes a systematic approach to promot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one of the detailed goals of the SDG3.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outh and North Korea Health and Welfare System, South and 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개선이 불투명한 가운데 최근 수년간 북한이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합의한 전략적 중기계획의 틀에서의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고 있음. 2010년대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국제인권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2016년 9월 1일 유엔상주조정관 유엔북한팀과 북한 국가조정위원회 외무성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을 향하여 - 유엔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 합의한 바 있음. 정부와 대북 민간 주체들의 남북 교류·협력은 앞으로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SDGs에 조응하는 전략계획 수립이 요청됨.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의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태도 변화와 이를 기반으로 합의한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복지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와 지속가능

#### 4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점에서의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 연구

개발목표에 대한 입장을 북한 출간 자료(노동신문) 및 유엔 산하기구 보고서를 통해 문헌 분석하였고, 노동신문(2005년~2018년) 자료를 활용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유엔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봄.

분석 결과 북한은 유엔을 둘러싸고 상황에 따른 다양한 외교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음. 국제사회의 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대내적으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체제의 강건성이나 내부적 결속을 천명하는 경향을 보임. 북한은 유엔을 향해 군사적 행위, 인권 이슈 제기 등과 관련해 날 선 비판을 하면서도 유엔의 공정성을 촉구하고 신뢰 회복을 요청하는 등 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함. 유엔의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주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국가는 주로 미국과 일본으로 확인됨. 이는 북한의 공격적 태도가 유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국제 정세에 맞춰 미국이나 일본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는 전략을 추구할 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아울러 식량 문제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됨. 노동신문 기사에서 유엔은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을 적대시하는 비판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음. 제재로 인한 북한 경제의 위축과 이에 따른 생활상의 문제를 유엔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북한 당국의 정치적 책임을 덜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엔을 매개로 한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는 단순히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관계로만 볼 수 없으며, 북한 내 정치 관계까지 고려하여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북한과 유엔의 전략계획 합의 배경 및 전개 과정에 있어 유엔이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정 중심적인 접근법에 보다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북한도 나름대로 호응하고 있다는 점을 UNSF 2017-2021 합의 사례를 통해 확인함. UNSF

2017-2021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개발협력정책을 연계하여 작성된 북한과 유엔 간 협력로드맵으로 SDGs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이를 북한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적용할지에 대한 세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3. 결론 및 시사점

북한과 유엔이 합의한 UNSF 2017-2021과 조응하여 남북 교류·협력에서도 영유아, 아동, 여성, 노인 등 취약집단의 기아 및 영양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한 인도적 지원·협력과 식량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북한 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함께 모색해야 함.

보건복지 분야 남북 교류·협력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SDG3의 세부 목표 중 하나인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촉진하는 방향의 시스템적 접근을 요구함. 보편적 건강보장은 주요 지속가능개발목표에 해당하는 것이자 북한 정부가 비준한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상 건강권 실현 의무로서 요구되는 것이기도 함. 이 같은 보편적 인권규범과 개발목표에 근거해,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에서 북한 정부의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북한 사회의 자체 건강 증진 역량을 키우기 위한 내용이 보다 강조점을 띠어야 함. 북한 정부 역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선 개발협력을 요청하는 만큼, 보건 분야의 물질토대를 개선하는 사업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므로 보건복지 교류·협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봄.

\*주요 용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개선이 불투명해지면서 최근에는 북한 주재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과 북한 당국이 합의한 전략적 중기계획 틀에서의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남한 정부와의 공식 대화를 중단했을 뿐 아니라 남측 민간단체와의 접촉조차 내부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과 합의한 전략적 중기계획을 교류·협력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추진 가능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기계획의 기본적 프레임이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개발목표의 틀에서 앞으로 북한과 어떠한 교류·협력이 가능할 것인가를 탐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2016년 9월 1일 유엔상주조정관 유엔북한팀과 북한 국가조정위원회 외 무성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을 향하여-유엔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전략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북한에서 진행할 유엔의 활동에 대해 합의된 우선순위들을 담고 있으며,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실현을 공통 목표로 하였다(United nations[UN], 2016/2017).

2010년대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SDGs, 국제인권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 남북 교류·협력 역시 이러한 북한의 흐름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재조정 될 때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전략계획의 합의 과정에서 북한은 프로그램 전반에서 ‘인간을 중심에 둔 인권 중심의 접근법(human rights-based approach)’을 채택한 바 있고(UN, 2016/2017), 2010년 전후로 아동, 여성 등의 권리 증진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는 등 인권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던 과거와는 전향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1)</sup>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으며, 실행의 효과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와 대북 민간 주체들의 남북 교류·협력은 앞으로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SDGs에 조응하는 전략계획 수립이 요청된다. 민간단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대북 지원계획의 체계적 조정 기구 마련(보건복지부 등 정부 조직, 공공기관 참여)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중기적 전략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인도적 필요와 우선순위(Needs and Priorities)’에 대한 합의 및 대북 지원계획의 공유, 조정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인 인도적 필요와 지원 전략, 필요 자금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남측 기관들의 대북 지원에 대한 역할 분담 수립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의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태도 변화와 이를 기반으로 합의한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복지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1) 북한은 2010년 12월에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이보다 앞서 2003년 6월에 장애인차별금지법, 2007년 4월 노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08년 1월에는 사회복지법제를 제정하였다. 한편 2013년에는 북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고, 2016년 12월에 비준하여 2017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던 1990년대와는 달라진 북한의 태도를 보여준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내용

이 연구에서는 먼저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와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입장을 보도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2005~2018년 상반기까지의 노동신문 기사 내용 중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관련된 기사들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탐색하고, 노동신문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7~2019년 10월까지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북한과 유엔의 전략계획 합의 배경 및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유엔과의 전략계획 합의 과정 및 합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북한 체제의 변화와 정치·경제적 변화와 전략계획 수립의 관련성도 분석하였다. 전략계획을 분석하는 것은 이 계획이 지속가능개발목표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향후 달성을 위해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파악하고, 교류·협력의 목표와 실행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첫째,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한반도 사회통합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목표 중심으로 체계화된 대북 협력 사업 전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둘째,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교류·협력은 중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남북 경제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지

원 역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양과 질의 진폭이 크므로 중장기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 협력 사업 중심으로 대북 보건복지 지원 사업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 2. 연구 추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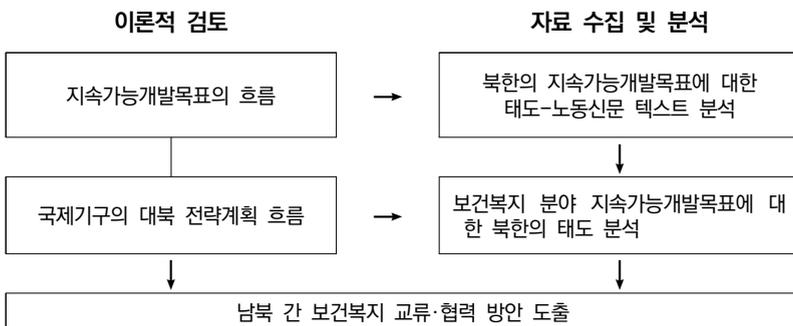
이 연구는 주로 문헌 연구에 기반하여 수행되었다.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해 관련자 면담 등이 제한되어 좀 더 구체적인 자료 수집은 불가하였다. 문헌 연구에서는 주로 유엔 보고서, 북한 관련 연구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양적 조사로는 노동신문(2005~2018년)의 텍스트분석을 통해 유엔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선중앙방송·중앙통신(2017~2019년 10월)의 보도 내용은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의 구조

이 연구는 [그림 1-1]과 같은 흐름에 따라 진행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구조



## 제 2 장

# 북한의 유엔에 대한 태도와 교류·협력의 가능성

제1절 북한·유엔의 관계와 분석 방법

제2절 북한 내 보도에서의 유엔

제3절 분석의 함의



# 2

## 북한의 유엔에 대한 태도와 << 교류·협력의 가능성

### 제1절 북한·유엔의 관계와 분석 방법

#### 1. 북한의 인권외교와 유엔

1991년 제46차 유엔총회에서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양자 모두 유엔 회원국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지게 되었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의 노력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유엔 인권기구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인권 개선 요구에 반발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북한은 유엔 인권기구의 결의에 대해 “국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인권기구 및 제도를 지지하지만, 인권 문제를 편파적으로 이용하여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서보혁, 2014, p. 172). 이런 입장에서 북한은 자국의 국가주권을 인정하는 경우 인권 개선을 위해 건설적 접근에 협력하지만, 적대국이 인권 개선을 요구할 경우 강하게 반발하는 이중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한편 유엔은 모든 활동에서 인권을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고, 유엔의 개발 지원 프레임워크(UN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의 핵심 원칙에도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 유엔의 인권 기반 접근은 다른 개발원조 활동에도 반영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도 산하 거버넌스 네트워크(GOVNET) 내에 인권실무팀(Human Rights

Task Force)을 두고 “공여국의 개발원조가 협력 대상국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 원칙을 개발협력에 반영하고, 개발협력 과정에서 인권지표를 활용해 인권 상황을 분석·평가할 것을 개발원조위원회 회원들에게 제안”하기도 하였다(OECD, 2007; 이주영, 이성훈, 임유경, 전지은, 정은주, 2014, p. 19에서 재인용). 이렇게 유엔, OECD 등 국제 개발원조의 중요 제공 주체들이 인권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국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른바 정상국가로서 자국 내 인권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하고 있다. 유엔전략계획의 합의 과정에서 인권적 관점을 수용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유엔 중심의 인권 관점을 얼마나 더 수용하는가에 따라 교류·협력의 방향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북한이 유엔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여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분석 방법

분석은 200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노동신문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시기 내 기사문 가운데 본문에 ‘유엔’이나 이와 관련된 용어(‘국제연합’ 등)가 포함된 경우를 추출하여 텍스트 마이닝 과정을 거쳤다. 유엔이 포함되지 않은 ‘인권’이 언급된 기사문의 경우 대부분 서방국가를 비난하는 기사였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추출된 기사문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은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분석 대상 기사문의 본문에 대한 형태소 분해를 하였다. 인명, 단체명과 같은 고유명사의 차이나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단어 등으로 인해서 신규 단어 사전을 계속 갱신하면서 형태소 분해 결과의 질

을 높이는 과정을 거쳤다. 형태소 분석 과정을 통해 일별, 기사문별, 단어별 빈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구축한 DB를 바탕으로 ‘유엔’ 관련어의 시기별 출현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자료 특성상 이 분석에서는 시간 단위를 월별로 하여 단어 출현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분석은 시계열적 변화에 대한 시각적 검토와 출현 수준이 특히 높은 시점의 주요 이슈와 관련 기사문 예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관련 단어 출현의 시계열적 패턴과 빈출 시기의 이슈를 검토함으로써 조사 시기 내 노동신문에서 드러나는 유엔과의 주요한 사건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의 세 번째 단계는 형태소 분해 DB를 활용하여 전체 분석 대상 기사문의 토픽을 추출하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이다. 이 분석에서는 토픽 모델링 기법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을 실시하였다. LDA는 특정 텍스트 내에서 단어 출현의 확률적 구조를 결정하는 잠재적인 확률 프로세스(토픽)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추정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대상 텍스트 그룹이 몇 개의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 분석은 토픽 수를 다양하게 변동시키면서 의미상 타당한 분류가 도출되는 경우 이를 선택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토픽 수가 최적 수준보다 적을 경우 이질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토픽이 출현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소규모의 텍스트가 분류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토픽 수를 다양하게 변동시키면서 최적 토픽 수를 구하는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의미상 타당성이 높은 모형을 채택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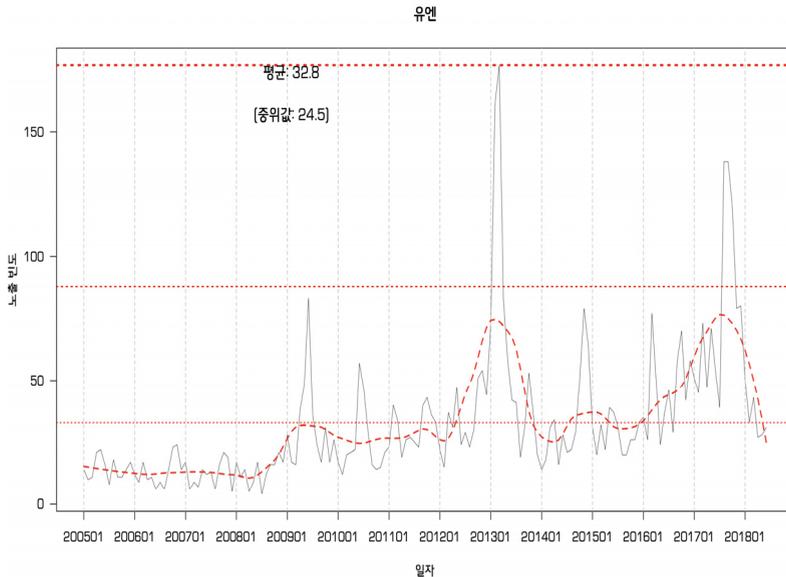
한편 노동신문 이외에 북한에서 대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활용되는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의 2017~2019년 10월의 자료를 보완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출처는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nkinfo.unikorea.go.kr>)의 '정치→동향'과 '북한방송 주요내용'으로 여기에 등록되어 공개된 자료를 검색하여 중복된 내용을 제거한 후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방송 내용 전체를 수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텍스트 분석은 불가능하여 질적으로 분석하여 유엔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기조의 최근 변화를 보완적으로 확인하는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 제2절 북한 내 보도에서의 유엔

### 1. 노동신문 노출 빈도의 시계열적 변화

다음의 [그림 2-1]은 ‘유엔’ 관련 단어의 시계열적 변화를 월 단위로 취합하여 제시한 것이다. 곡선으로 추세선을 제시하였으며, 세 개의 수평선은 아래로부터 각각 평균, 평균에서 2표준편차 떨어진 값, 최댓값을 각각 의미한다.

[그림 2-1] ‘유엔’ 관련 단어의 월별 노출 변화



자료: 노동신문 2005~2018년 8월, 저자 작성.

‘유엔’은 전체 조사 기간에서 월평균 32.8회(표준편차 27.4)가 노출되었는데, 중위값은 24.5회로 전체 분포상 노출 수준이 빈도수가 높은 방향으로 편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시계열적인 추세(트렌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는데,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노출 수준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편 2009년 상반기, 2013년 상반기, 2017년 후반기에 노출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2-1>은 단어의 노출 빈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 30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시기, 빈도수와 표준화값으로 빈도수의 z값을 제시하였다.

<표 2-1> 주제어 출현 빈도 상위 시기

순위	시기	빈도	z	순위	시기	빈도	z
1	2013. 3.	177	5.3	16	2014. 12.	64	1.1
2	2013. 2.	161	4.7	17	2013. 5.	58	0.9
3	2017. 8.	138	3.8	18	2016. 9.	58	0.9
4	2017. 9.	138	3.8	19	2016. 12.	58	0.9
5	2017. 10.	119	3.1	20	2010. 6.	57	0.9
6	2009. 6.	83	1.8	21	2012. 11.	54	0.8
7	2013. 4.	82	1.8	22	2017. 6.	54	0.8
8	2017. 12.	80	1.7	23	2013. 10.	53	0.7
9	2014. 11.	79	1.7	24	2012. 10.	51	0.7
10	2017. 11.	79	1.7	25	2014. 10.	51	0.7
11	2016. 3.	77	1.6	26	2017. 1.	51	0.7
12	2013. 1.	73	1.5	27	2016. 4.	50	0.6
13	2017. 3.	73	1.5	28	2018. 1.	50	0.6
14	2017. 5.	71	1.4	29	2009. 5.	48	0.6
15	2016. 10.	70	1.4	30	2010. 7.	47	0.5

자료: 노동신문 2005~2018년 8월까지의 기사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표 2-1〉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빈도수 순위 5위까지가 표준화값 3 이상의 높은 수준의 이상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위 이상부터는 점차 표준화값이 하락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2017년과 2013년에 유엔에 대한 언급이 많아진 때가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도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때가 많았다.

다음의 〈표 2-2〉는 상위 5위에 속하는 빈출 수준을 보인 시기의 주요 북한 관련 이슈와 분석에 활용된 기사문의 제목 예시를 정리한 것이다.

〈표 2-2〉 최다 출현 시기별 주요 북한 이슈와 기사문 예시

시기	주요 북한 이슈	기사문 예시(제목, 일자)
2013. 3.	- 유엔 안보리 북한 고강도 제재 결의안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결을 격화시킨 불순한 《인권》모략소동(2013. 3. 1.)</li> <li>■ 유엔인권리사회의 차별행위, 편견적인 태도 비난(2013. 3. 6.)</li> <li>■ 세계는 핵전쟁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2013. 3. 28.)</li> </ul>
2013. 2.	- 북한 핵실험 추정 인공 지진 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안보리사회회의 천만부당한《결의》를 규탄한다(2013. 2. 1.)</li> <li>■ 일본의 경찰위성발사는 왜 문제시되지 않는가(2013. 2. 1.)</li> <li>■ 날강도적인 《제재결의》는 이중기준의 극치(2013. 2. 2.)</li> </ul>
2017. 8.	- 신규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핵위협을 불가능한것으로 만든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 1 4》형(2017. 8. 6.)</li> <li>■ 미국의 새로운 제재조치 규탄(2017. 8. 7.)</li> <li>■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가 유엔안보리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었다.(2017. 8. 28.)</li> </ul>
2017. 9.	- 북한 ICBM용 수소탄 실험 성공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안보리사회회의 《의장성명》은 미국주도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의 산물이다.(2017. 9. 3.)</li> <li>■ [정세론해설] 인권범죄자의 재판관행세.(2017. 9. 4.)</li> <li>■ 《조선 로켓발사를 계속 단행할것이라고 천명》(2017. 9. 6.)</li> </ul>

## 2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점에서의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 연구

시기	주요 북한 이슈	기사문 예시(제목, 일자)
2017. 10.	- 북한 제재 관련 법안 미 하원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세론해설] 반미성토장으로 화한 유엔무대. (2017. 10. 2.)</li> <li>■ 전체 해외동포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2017. 10. 4.)</li> <li>■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2017. 10. 4.)</li> </ul>

자료: 노동신문 2005~2018년 8월까지의 기사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표 2-2〉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노동신문에 나타난 유엔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다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2013년 2월의 기사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규탄’의 대상이라거나, 2017년 9월 기사의 예제와 같이 유엔을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로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2017년 10월의 기사 예제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유엔이 북한의 입장을 호소하는 일종의 외교적 채널로 기능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북한의 핵무장과 관련해 유엔을 통한 제재가 유지되는 가운데 북한은 유엔을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노동신문 텍스트 토픽 모형화 결과

다음의 [그림 2-2]는 토픽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 분석에서 의미상 최적 토픽은 11개인 것으로 보았다. 실제 분석은 토픽을 다섯 개로 가정한 모형부터 결과를 비교했다. 토픽 수를 11개까지 늘렸을 때는 의미 있는 토픽으로 분화되어 나타났으나, 12개부터는 특별히 해석이 어려운 토픽이 나타나는 등 모형의 의미상 타당성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분석에 활용된 기사문은 총 5,499건이었다.



24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점에서의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 연구

검토한다면 토픽의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토픽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서 다루도록 하겠다. 아래 <표 2-3>은 앞서 살펴본 [그림 2-2]에서 제시된 내용 가운데 토픽별로 베타값이 높은 주요어 일부를 다시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2-3> 토픽별 상위 주제어(발체)

토픽	단어	베타	토픽	단어	베타
1	우리	0.089	7	이스라엘	0.026
1	미국	0.025	7	팔레스티나	0.021
1	공화국	0.015	7	남조선	0.02
1	조선	0.014	7	대결	0.019
1	제재	0.014	7	괴뢰	0.017
1	트럼프	0.009	7	우리	0.017
1	전쟁	0.008	7	반공화국	0.016
1	나라	0.008	7	당국	0.014
1	미제	0.008	7	동족	0.012
1	자주권	0.007	7	외세	0.012
2	나라	0.047	8	남조선	0.041
2	미국	0.029	8	전쟁	0.036
2	발전	0.012	8	조선	0.03
2	유엔	0.011	8	미제	0.024
2	자기	0.01	8	미국	0.024
2	평화	0.01	8	반도	0.018
2	자주	0.009	8	우리	0.017
2	이란	0.009	8	괴뢰	0.011
2	제국주의자	0.009	8	미군	0.01
2	세계	0.009	8	도발	0.009
3	일본의	0.02	9	미국	0.025
3	일제	0.016	9	세계	0.015
3	일본반동들	0.013	9	로씨야	0.009
3	나라	0.013	9	유엔	0.008
3	우리	0.013	9	문제	0.008
3	과거	0.012	9	지역	0.007
3	력사	0.011	9	발표	0.006
3	조선	0.008	9	사람	0.005
3	범죄	0.008	9	진행	0.005

토픽	단어	베타	토픽	단어	베타
4	미국	0.046	10	통일	0.022
4	우리	0.037	10	위대	0.018
4	핵무기	0.017	10	위원장	0.016
4	조선	0.016	10	동지	0.016
4	미싸일	0.015	10	김정일	0.015
4	나라	0.015	10	우리	0.013
4	반도	0.014	10	나라	0.013
4	위협	0.011	10	투쟁	0.012
4	정책	0.009	10	조국통일	0.012
5	인권	0.034	11	위대	0.025
5	남조선	0.019	11	인민	0.015
5	우리	0.017	11	동지	0.014
5	미국	0.016	11	승리	0.014
5	박근혜	0.011	11	수령	0.014
5	모략	0.01	11	경애	0.012
5	인민	0.007	11	혁명	0.011
5	인권문제	0.007	11	나라	0.01
5	소동	0.007	11	장군	0.01
6	조선	0.047			
6	미국	0.034			
6	유엔안전보장리사회	0.022			
6	성명	0.02			
6	우리	0.019			
6	결의	0.019			
6	나라	0.019			
6	제재	0.017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0.017			
6	다음	0.011			

자료: 노동신문 2005~2018년 8월까지의 기사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아래 <표 2-4>는 토픽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토픽별 주요어 예시와 더불어 관련성이 높은 기사의 제목 예시를 함께 제시하였다. LDA 분석 결과를 통해 분석에 포함된 개별 텍스트에 대해 특정 토픽에 속하는 정도를 통계치(감마값)로 측정할 수 있는데, 제시된 예시는 해당 값이 높은 기사 중에서 발췌하였다.

26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점에서의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 연구

〈표 2-4〉 토픽 분석 결과 요약

토픽	주	주요어	예제 기사(제목)
1	제재 강경 대응	전쟁, 제재, 위협, 타격 등	공격형로케트로 승냥이소굴을 풍지박산내야 한다.
2	유엔 관련 논평	발전, 자주, 평화 등	유엔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3	일본 비판	일본, 일제, 책동 등	일본은 과거죄악의 책임을 절대로 회피할수 없다
4	미국 군사행동 비판	미국, 위협, 핵전쟁 등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음흉한 술책
5	인권 비판 대응	인권, 남조선, 반공화국 등	[정세론해설] 통할수 없는 반공화국《인권》모라나발
6	유엔 통한 의사 표현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강조 등	주권국가의 당연한 자주적권리
7	남한 정계 비판·요구	대결, 통일, 동족, 망동 등	북남공동선언의 존중과 리행에 민족의 전도가 있다.
8	유엔 군사행동 비판	유엔군, 도발, 전쟁, 미제 등	남조선영구강점과 복침을 위한 《유엔군사령부》강화책동
9	식량·환경위기	식량, 어린이, 보고서 등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움직임
10	축전	위대, 동지, 경애 등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11	체제 강건성	위대, 조선, 승리, 위업 등	선군의 기치높이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

자료: 노동신문 2005~2018년 8월까지의 기사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토픽 1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토픽 2는 유엔의 날 등을 기념하여 유엔에 대한 요구나 방향성 제시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로 유엔의 신뢰 회복이나 공정성 등을 요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 3은 일본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식민지 지배를 자행한 전범국의 역사에 대한 비판부터 최근 일본의 국제 동향 비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 4는 주로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비판과 관련이 있는 토픽이었다.

토픽 5는 북한 인권에 관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음모’로 반박하거나, 미국이나 한국의 인권 문제 등을 들어 역으로 비판을 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토픽 6은 유엔을 무대로 행해진 공식 논평이나 발언과 관련이 있었다. 내용은 다양했는데 북한의 자주성이나 역량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토픽 7은 한국 정계를 향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주로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을 환기시키거나 한국 내 보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토픽 8은 유엔군사령부의 군사적 압박, 한반도 내 잔적 활동 등과 관련한 비판에 관한 것이었다.

토픽 9는 국제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식량난과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 오염을 식량난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는 등 두 문제를 함께 있는 기사문도 관찰할 수 있었다. 토픽 10은 북한 정치 지도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축전 등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끝으로 토픽 11은 국제 체제하에서도 북한 체제의 강건성을 강조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토픽 모형과 결과를 요약하면 북한은 유엔을 둘러싸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외교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는 시점에는 대내적으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토픽 1), 체제의 강건성이나 내부적 결속을 천명하는(토픽 11)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유엔을 향해 군사적 행위(토픽 8), 인권 이슈 제기(토픽 5) 등과 관련해 날 선 비판을 하면서도 유엔의 공정성을 촉구하고 신뢰 회복을 요청하는(토픽 2, 토픽 6) 등 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유엔의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주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국가는 미국(토픽 4), 일본(토픽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공격적 태도가 유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보다는 국제 정세에 맞춰 미국이나 일본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는 전략을 추구할 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식량 문제(토픽 9)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유엔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2-5>는 토픽별 대표적 기사문을 제시한 것이다. 각 토픽에 속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감마값 순위로 해당 기사의 기사문을 나열했다. 토픽 10의 경우 북한 지도자에 대한 축전으로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여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제목이 다소 긴 경우는 말줄임표로 제목의 후반부를 축약해서 표기하였다.

<표 2-5> 토픽별 주요 기사문

토픽	감마	제목
1	0.9987	[정세론해설] 최후승리를 기어이 안아오야말것이다
	0.9986	[정세론해설] 전쟁미치광이는 불로 다스려야 한다
	0.9977	[론평] 깡패두목의 히스테리적격기
	0.9664	[론평] 주체조선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
	0.9462	[론평] 악의 제국의 마지막발버둥질
	0.9437	[정세론해설] 최후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
	0.9303	위력한 공격형로케트로 승냥이소굴을 풍지박산내야 한다
	0.9200	[정세론해설] 우리의 핵억제력은 평화수호의 위력한 보검
	0.9026	[론평] 대결에 환장한 광녀의 녀두리
	2	0.9991
0.9989		공정한 국제질서수립을 위한 근본요구
0.9989		일극세계화에 대처한 지역적통합움직임
0.9988		분쟁문제해결에서 허용하지 말아야 할 외세의 간섭
0.9988		붕괴되어가는 제국주의신식민지배체계
0.9987		유엔의 민주화는 시대의 절박한 과제
0.9985		단결과 협조의 가치를 높이 들고
0.9983		남남협조는 진보와 번영의 길
0.9979		유엔의 민주화는 현시대의 절실한 요구

토픽	감마	제목
3	0.9991	일본은 과거청산을 더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0.9989	허위문서날조로 조선을 불법강점한 파렴치한 침략자
	0.9989	반드시 결산되어야 할 일제의 극악무도한 죄악
	0.9988	강제연행, 성노예범죄에 대한 외곡과 부정은 이중의 죄악
	0.9988	날강도적으로 조작한 불법무효한 《조약》
	0.9988	일본의 100년죄악을 총결산할것이다
	0.9988	국제법협잡군, 파렴치한 날강도무리
	0.9987	일본은 과거죄악의 책임을 절대로 회피할수 없다
	0.9986	과거청산은 일본의 회피할수 없는 법적, 도덕적책임
4	0.9986	미국은 교훈을 찾고 신뢰성있는 태도변화를 보여야 한다
	0.9856	핵전파주범의 당치 않은 역선전
	0.9639	세계는 핵범인을 심판할것이다
	0.9622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음흉한 술책
	0.9600	지체없이 핵무기를 철수해야 한다
	0.9489	우주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0.9457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에서 급선무는 미국의 핵위협을 종식시키고...
	0.9441	핵군축에 관한 유엔고위급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이 연설
	0.9403	핵전파, 핵군비경쟁의 장본인은 미국이다
0.9141	우려를 자아내는 우주군사화책동	
5	0.9986	《유신》독재를 되살리는 야만적인 파썬통치
	0.9979	[정세론해설] 특등범죄자의 파렴치한 《인권침해》타령
	0.9978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괴뢰패당의 파썬적탄압만행은 준엄한 심판을...
	0.9973	파렴치한 인권광대극으로 초불민심에 정면도전해나선 박근혜역도와 그 잔당...
	0.9928	독재자의 자화자찬
	0.9884	정의와 민심에 도전해나서는 천하역적무리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0.9775	[정세론해설] 통할수 없는 반공화국《인권》모략나발
	0.9686	인권유린자들의 모략소동은 통할수 없다
	0.9653	반역정치와 인권은 량립될수 없다
0.9421	피묻은 입으로 인권에 대해 떠들지 말라	

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점에서의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 연구

토픽	감마	제목
6	0.9971	조선의 선언은 빈말이 아니다
	0.9967	주권국가의 당연한 자주적권리
	0.9967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0.9967	반인륜적인 고립압살행위
	0.9966	날강도적인 조작품
	0.9964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0.9964	《북조선 미국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경고》
	0.9963	대조선《재계결의》를 즉시 철회하라
	0.9960	조선의 퇴성은 계속 올리게 될것이다
	0.9957	우리 나라 외무성 성명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
7	0.9978	[정세론해설] 《대화》타령과 상반되는 도발망동
	0.9976	인도주의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
	0.9810	정착촌확장증지를 이스라엘에 요구
	0.96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0.9675	[정세론해설] 극악무도한 반통일죄악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0.9668	[정세론해설] 북남관계에 립하는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한다
	0.9638	[정세론해설] 기만과 흥심으로 가득찬 《대화》타령
	0.9601	[정세론해설]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반역행위
	0.9512	북남관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0.9507	《대화》간판뒤에 숨겨진 비수
8	0.9975	영구강점을 노린 범죄적흉계
	0.9964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
	0.9842	[정세론해설]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는 시대의 요구
	0.9833	조선전쟁은 면밀한 준비밑에 감행된 침략전쟁
	0.9776	남조선영구강점과 북침을 위한 《유엔군사령부》강화책동
	0.9733	조선전쟁도발자 미제의 추악한 정체
	0.9626	전쟁도발자들의 고백에 의하여 드러난 《남침》설의 기만성
	0.9528	《유엔군》의 모자를 쓴 전쟁의 화근은 제거되어야 한다
	0.9528	침략적군사기구는 근원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토픽	감마	제목
9	0.9987	식량위기로 비상상태에 처하여있는 오늘의 세계
	0.9985	세계식량위기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노력
	0.9984	세계식량가격 최고기록, 인류를 위협하는 식량위기
	0.9984	국제적우려를 자아내는 식량가격폭등
	0.9983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식량위기
	0.9982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움직임
	0.9982	기후변화의 위험성과 엄중한 후과
	0.9982	[정세론해설] 인류앞에 닥쳐온 위기 - 지구온난화
	0.9980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성행하는 죽음의 전염병
	0.9980	[정세론해설] 누구도 외면할수 없는 지구온난화방지문제
10	-	[축전 내용]
11	0.9997	10월의 푸른 하늘은 영원하다 - 조선로동당창건 60돐에 이 글을 드린다
	0.9991	만민의 경모의 정 넘치는 주체의 최고성지
	0.9984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
	0.9911	사상의 강자들을 키우는 선진선동공세
	0.9902	선군의 기치높이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
	0.9894	5대교양은 올해 사상공세의 중요한 임무
	0.9883	김일성, 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0.9844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의 강성변영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업적...
	0.9843	[정론]위대한 조국을 위하여 청년들 앞으로!
	0.982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승리와 변영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자료: 노동신문 2005~2018년 8월까지의 기사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3. 중앙방송·중앙통신에서 다루진 유엔

자료의 출처는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nkinfo.unikorea.go.kr>)의 ‘정치→동향’과 ‘북한방송 주요 내용’으로 여기에 등록되어 공개된 자료 중 2017~2019년 10월까지의 보도 내용 중 유엔이 포함된 기사를 검

색하여 동일한 내용을 제거한 후 분석하였다. 방송·통신 보도 내용의 분석은 유엔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과 중립적인 것, 긍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였다. 부정적 태도를 보인 기사에는 유엔 제재에 대한 비판 기사, 유엔 총회 등에 참석하여 비판 의견을 개진한 기사를 포함하였다. 중립적인 기사는 주로 유엔 관계자의 북한 방문 사실에 대한 보도였으며, 긍정적인 기사로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한 기사를 포함하였다.

이 기간 동안 유엔을 포함한 기사는 총 249건으로 이 중 부정적인 기사가 159건(유엔 제재 비판 120건, 비판 의견 회의 발언 39건)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립적인 기사는 50건으로 20.1%, 긍정적인 기사는 40건으로 16.1%였다.

〈표 2-6〉 중앙방송·중앙통신의 유엔 보도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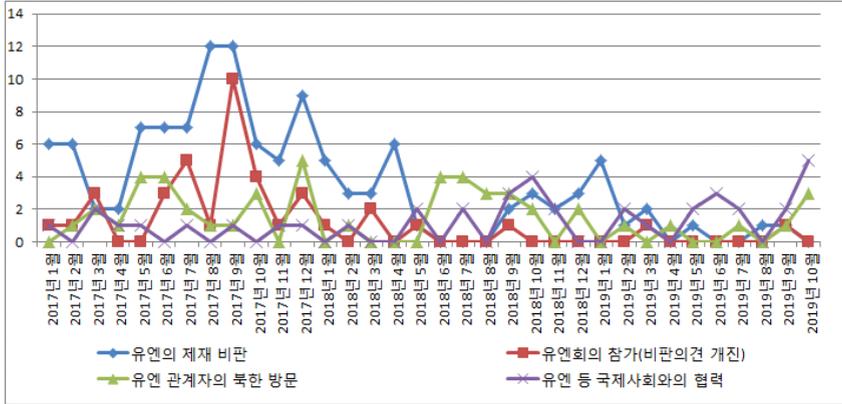
구분	유엔에 대한 태도								합계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유엔 제재 비판		회의 발언(비판 의견)		유엔 관계자 방문 긍정 보도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017년 1월	6	2.4	1	0.4	0	0.0	1	0.4	8	3.2
2017년 2월	6	2.4	1	0.4	1	0.4	0	0.0	8	3.2
2017년 3월	2	0.8	3	1.2	2	0.8	2	0.8	9	3.6
2017년 4월	2	0.8	0	0.0	1	0.4	1	0.4	4	1.6
2017년 5월	7	2.8	0	0.0	4	1.6	1	0.4	12	4.8
2017년 6월	7	2.8	3	1.2	4	1.6	0	0.0	14	5.6
2017년 7월	7	2.8	5	2.0	2	0.8	1	0.4	15	6.0
2017년 8월	12	4.8	1	0.4	1	0.4	0	0.0	14	5.6
2017년 9월	12	4.8	10	4.0	1	0.4	1	0.4	24	9.6
2017년 10월	6	2.4	4	1.6	3	1.2	0	0.0	13	5.2
2017년 11월	5	2.0	1	0.4	0	0.0	1	0.4	7	2.8
2017년 12월	9	3.6	3	1.2	5	2.0	1	0.4	18	7.2
2018년 1월	5	2.0	1	0.4	0	0.0	0	0.0	6	2.4

구분	유엔에 대한 태도									합계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유엔 재제 비판		회의 발언(비판 의견)		유엔 관계자 방문 긍정 보도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2018년 2월	3	1.2	0	0.0	1	0.4	1	0.4	5	2.0	
2018년 3월	3	1.2	2	0.8	0	0.0	0	0.0	5	2.0	
2018년 4월	6	2.4	0	0.0	0	0.0	0	0.0	6	2.4	
2018년 5월	1	0.4	1	0.4	0	0.0	2	0.8	4	1.6	
2018년 6월	0	0.0	0	0.0	4	1.6	0	0.0	4	1.6	
2018년 7월	0	0.0	0	0.0	4	1.6	2	0.8	6	2.4	
2018년 8월	0	0.0	0	0.0	3	1.2	0	0.0	3	1.2	
2018년 9월	2	0.8	1	0.4	3	1.2	3	1.2	9	3.6	
2018년 10월	3	1.2	0	0.0	2	0.8	4	1.6	9	3.6	
2018년 11월	2	0.8	0	0.0	0	0.0	2	0.8	4	1.6	
2018년 12월	3	1.2	0	0.0	2	0.8	0	0.0	5	2.0	
2019년 1월	5	2.0	0	0.0	0	0.0	0	0.0	5	2.0	
2019년 2월	1	0.4	0	0.0	1	0.4	2	0.8	4	1.6	
2019년 3월	2	0.8	1	0.4	0	0.0	1	0.4	4	1.6	
2019년 4월	0	0.0	0	0.0	1	0.4	0	0.0	1	0.4	
2019년 5월	1	0.4	0	0.0	0	0.0	2	0.8	3	1.2	
2019년 6월	0	0.0	0	0.0	0	0.0	3	1.2	3	1.2	
2019년 7월	0	0.0	0	0.0	1	0.4	2	0.8	3	1.2	
2019년 8월	1	0.4	0	0.0	0	0.0	0	0.0	1	0.4	
2019년 9월	1	0.4	1	0.4	1	0.4	2	0.8	5	2.0	
2019년 10월	0	0.0	0	0.0	3	1.2	5	2.0	8	3.2	
합 계	120	48.2	39	15.7	50	20.1	40	16.1	249	100.0	

자료: 2017~2019년 10월까지의 중앙방송·중앙통신의 보도 내용 중 북한정보포털(<http://nkinfo.unikorea.go.kr>)의 '정치→동향'과 '북한 방송 주요 내용'에 수록된 기사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림 2-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유엔에 대한 부정적 기사는 2017년 8~9월에 가장 많았고, 중립적인 기사는 유엔 관계자의 방문이 있었던 시기에 집중되었다.

[그림 2-3] 중앙방송·중앙통신의 유엔 보도 태도의 시계열적 변화



자료: 2017~2019년 10월까지의 중앙방송·중앙통신의 보도 내용 중 북한정보포털(<http://nkinfo.unikorea.go.kr>)의 '정치·동향'과 '북한 방송 주요 내용'에 수록된 기사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긍정적으로 분류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주로 '세계 위생시설의 날', '국제장애자의 날', '세계 물의 날', '세계 금연의 날', '세계 인구의 날', '세계 손 씻기의 날', '어린이 건강의 날', '유엔의 날' 등 유엔 또는 산하기구들이 정한 기념일에 그에 발맞추어 북한에서 진행한 사업들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북한은 주로 이러한 기념일에 북한 내 유엔 산하기구 인사들을 초청하여 인민대학습당이나 인민문화궁전에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왔다. 또 '블러블가담(비동맹) 외무상 회의'(2018년 9월 28일 보도), '기후행동 정상회의'(2019년 9월 27일) 등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책 방향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유엔 등을 상대로 보여 주기 위한 쇼잉(showing)으로 보인다.

### 제3절 분석의 함의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등의 보도를 통해 파악한 북한의 유엔에 대한 태도의 특징은 다면성에 있다.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규탄하거나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로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다. 특히 2013년과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 제재 시기에 많은 기사들이 노동신문 지면에 실린 바 있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두드러진 북한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부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엔을 북한의 입장을 호소하는 일종의 외교적 채널로 다루는 경우들이 발견된다. 유엔의 날 등을 기념하는 기사에서는 유엔의 신뢰 회복이나 공정성 등을 요구하며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2010년대 이후 북한이 여성, 아동 등의 권리보장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유엔이 주도하는 인권협약에 가입하고 국가 보고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펼치는 것은 향후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 나가고자 하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분석 결과 이러한 변화의 태도에 비해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중앙통신의 보도문에서 유엔은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을 적대시하는 비판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내부 정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로 인한 북한 경제의 위축과 이에 따른 생활상의 문제를 유엔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북한 당국의 정치적 책임을 덜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엔을 매개로 한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는 단순히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관계로만 볼 수 없으며, 북한 내 정치 관계까지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 제 3 장

## 국제기구 대북 전략계획의 전개와 합의

제1절 유엔전략계획의 합의 배경

제2절 유엔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제3절 유엔전략계획과 북한의 변화



# 3

## 국제기구 대북 전략계획의 << 전개와 합의

### 제1절 유엔전략계획의 합의 배경

2016년 9월 1일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북한팀(UN Country Team)<sup>2)</sup>과 북한 외무성 국가조정위원회는 유엔과 북한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Democratic People’s-Republic of Korea 2017-2021, 이하 UNSF 2017-2021)’에 합의했다.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북한팀은 5년 단위로 북한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에 합의된 UNSF 2017-2021은 이전 ‘유엔전략계획 2011-2015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1-2015, 이하 UNSF 2011-2015)’를 대체하는 것이다(UN/DPRK, 2016, pp. 8-9).<sup>3)</sup> UNSF 2017-2021은 유엔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국제사회가 추진할 개발목표로 제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기초하고 있다(UN, 2015). 이에 이 전략계획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은 “지속

2)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13개 기구로 구성된 유엔북한팀은 다음과 같다. FAO, UNDP, UNEP, UNESCAP, UNESCO, UNFPA, UNICEF, UNIDO, UNISDR, UNOCHA, UNOPS, WFP, WHO(UN/DPRK, 2016, pp. 4-5)

3) ‘유엔전략계획 2011-2015’는 이전 ‘유엔전략계획 2007-2009’(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7-2009, 이하 UNSF 2007-2009)’를 대체하는 것이다.

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에 있다(UN/DPRK, 2016, p. 9).

북한에서 유엔의 활동 목표는 북한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북한 정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이러한 유엔의 활동 목표에 기초한 UNSF 2017-2021은 북한에서 유엔이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 기구들의 전반적인 활동 방향을 파악하는 도구이다. 또한 UNSF 2017-2021은 단순한 물자 지원이 아니라, 국제적인 원칙과 가치, 표준,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UNSF 2017-2021은 국가 사업과 관련된 유엔의 포괄적 접근법에 따라 북한 상주·비상주 유엔 전문기구들의 활동을 아우르며, 인도적 측면과 장기적 개발 측면 모두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인도적 필요에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최상의 장기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UN/DPRK, 2016, p. 8).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UNSF 2017-2021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북한 정부와 유엔이 주요 사업 기획 원칙으로 내세운 7가지에서 북한만의 특수한 지역 현실에 맞게 SDGs를 적용한다는 것과 프로그램 전반에서 인권 중심의 접근법(HRBA: Human Rights-Based Approach)을 채택한 데 있다(UN/DPRK, 2016, pp. 8-9). 이 중에서 북한 정부와 유엔이 HRBA를 취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그동안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으로 대표되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내정간섭 및 주권 침해로 인식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서 본다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소극적이지만 북한의 유엔 인권 메커니즘 부분적 수용은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제재와 압박이 심해지면서 이에 대해 북한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북한은 유엔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이래로 국제 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에 대해 소극적으로 '거부' 혹은 '무시'하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차원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진아, 2015, p. 52; 모춘흥, 최진우, 2018, p. 159). 대표적인 예로 2015년 10월 18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조종하에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다시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획책하면서 초안 작성을 위한 협상 놀음을 벌리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는 가운데 “우리는 최근 유럽연합 인권담당 전권대표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을 초청하는 등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한 것을 들 수 있다(이상현, 2015; 모춘흥, 최진우, 2018, p. 159에서 재인용).

또한 UNSF 2017-2021에 언급된 유엔 상주조정실의 역할은 북한이 2014년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로 표시) 시 수용한 권고 및 국제인권협약 의무를 지원하는데 있다. 북한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UNSF 2017-2021이 채택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출한 북한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 상주조정실 활동을 환영하며,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수용한 검토 및 국제인권협약 의무 이행 후속 조치를 취하는 데 상주조정실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UN General Assembly, 2017a).

특히 UNSF 2017-2021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와 관련 정책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이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 지원과 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안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UNSF 2017-2021에서는 유엔 안

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결의), 1874호(2009년 결의), 2087호(2013년 결의), 2094호(2013년 결의)를 예로 들며, 이 같은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북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지원, 구호 활동을 저해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UNSF 2017-2021은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북한에서의 인도 지원 및 개발 사업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Human Right Council, 2017, pp. 12-13).

한편 2019년 5월 14일 보고서 초안이 공개된 북한의 UPR 국가 보고서에도 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한 사안을 열거함으로써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북한이 당국 차원에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새로운 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북한이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해 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UN, 2019; 김수경, 2019, pp. 2-3에서 재인용).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제3차 UPR 국가 보고서 초안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체제 유지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엔 차원의 대북 인권 개선 요구를 수용”하고 있으며(모춘홍, 최진우, 2018, p. 159),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인권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수경, 2019, pp. 4-7).

최근 들어 북한이 취약계층의 건강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은 2018년 1월 28일 노동신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하고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영양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그들이 국가적인 건강보호혜택을 정상적으로 받고있는것은 참으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바 있다(“지속가능개발목표를 통해”, 2018; 모춘흥, 정병화, 2019, p. 142에서 재인용).

이렇듯 그간 유엔인권결의안을 비롯하여 유엔이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반발했던 것과 달리 UNSF 2017-2021은 북한 정부가 특히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국제 규범 및 표준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 협약과 메커니즘의 이행, 정기 보고 등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UN/DPRK, 2016, pp. 20-21).

또한 시기적으로 보면 UNSF 2017-2021이 채택된 2016년은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구체적으로 2016년은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같은 해 3월과 11월에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제2270호와 제2321호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연계한 표현을 처음으로 포함시켰으며(도경옥, 2017, p. 10; 모춘흥, 정병화, 2018, p. 157에서 재인용),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과 우려를 표명하여 유엔총회에서 무투표 컨센서스(합의)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해였다(모춘흥, 최진우, 2018, p. 157).

그럼에도 2016년에 북한은 유엔 차원의 대북 인권 개선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도 하였다. 2016년 유엔인권결의안 전문에는 “북한 정부가 세계 보건기구(WHO)와 함께 자국의 보건 증진과 유엔아동기금(UNICEF)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UN General Assembly, 2017b; 모춘흥, 최진우,

2018, p. 159에서 재인용).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일정 부분 북한이 유엔이 요구하는 인권 개선을 부분적으로라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모춘홍, 최진우, 2018, p. 160). 또한 유엔인권결의안이 실제 북한의 인권 개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있지만, 북한이 당국 차원에서 유엔과의 양자 간 협력 사업 전반에서 HRBA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 기능은 실제적인 강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 연장선에서 UNSF 2017-2021이 상정하는 HRBA는 북한이 당면한 인권유린 문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정구연, 2017a, p. 145). 즉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은 강압과 설득 간의 균형적 시간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시각이 반영된 UNSF 2017-2021의 핵심은 인간 중심이라는 원칙과 인간 개발의 촉진이며, 이는 SDG16의 “정의롭고,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구현”과 맥을 같이한다(UN/DPRK, 2016, p. 26). 이러한 사실에 비춰 보면 유엔이 보편적 인권 규범을 북한에 투영시키려는 노력이 정치적인 제약 속에서도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엔의 태도는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책과 유사한데, 유럽연합은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연계하는 전략보다는 북한 체제의 변화에 집중한다. 결국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정 중심적인 접근법에 보다 집중”하고 있으며, 북한도 나름대로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무성, 박민중, 2016, p. 322). UNSF 2017-2021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제2절 유엔전략계획의 주요 내용<sup>4)</sup>

이 절에서는 유엔 북한팀과 북한 외무성 국가조정위원회가 합의한 UNSF 2017-2021의 주요 내용을 전략적 핵심 사안(Strategic Focus), 관리(Management), 모니터링과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순서로 살펴보려 한다.

### 1. 전략적 핵심 사안(Strategic Focus)

유엔 대북 사업의 목표는 북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일차적 책임이 북한 정부에 있음을 전제하며, 유엔의 역할은 북한 주민, 특히 취약 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북한 당국의 활동을 돕고 강화하는 데 있다. 이 점은 북한 내 모든 유엔 활동 및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원칙이다. 이런 목표에 기초하고 있는 UNSF 2017-2021은 한정된 자금, 수행 공간, 유엔의 비교우위 등을 고려하여 유엔북한팀과 북한 외무성 국가조정위원회 간의 4개 영역, 즉 식량 및 영양 안보(Food and Nutrition Security), 사회개발 서비스(Social Development Services), 복원력과 지속가능성(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데이터와 개발 관리(Data and Development Management)의 영역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UN/DPRK, 2016, p. 10).<sup>5)</sup>

4) 이 절에서는 'UNSF 2017-2021'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UN/DPRK(2016)의 내용을 인용할 때 별도의 직접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5) 직전의 합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UNSF 2011-2015의 4가지 전략적 핵심 사안은 다음과 같다.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 지식 및 개발 관리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s for Knowledge and Development Management), 영양(Nutrition), 기후변화 및 환경(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United Nations, 2010, pp. 5-11).

UNSF 2017-2021은 북한의 특수성과 국제적인 보편성이 결합된 합의이며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유엔의 대북 사업이 갖고 있는 재정적·실천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북한 내 모든 유엔 활동 및 사업과 마찬가지로 UNSF 2017-2021의 성패는 북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에 달려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UNSF 2017-2021은 지역과 국제적인 보편성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북한에서 유엔의 다양한 역할을 가능하도록 하며, <표 3-1>과 같은 기능을 한다(UN/DPRK, 2016, pp. 10-12).

<표 3-1> 북한에서 유엔의 역할

지역과 국제사회를 연결: 북한에서 유엔의 다양한 역할	
1. 관계 형성과 국가 역량 구축	지식 전달 / 정책 대화
2. 합동 상황 분석과 정책 대화	
3. 국제적 가치와 표준 장려	
4. 국제적, 지역적 공리 증진	자원 전달 / 사업 실행
5. 국가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6. 즉각적인 인도적 필요에 대한 대응	

자료: UN/DPRK (2016). Country Team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 역,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을 향하여: U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 p. 12.

위의 <표 3-1>에서는 북한 내 유엔의 다양한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UNSF 2017-2021은 북한 정부의 장기적인 개발 노력과 인도적 요소를 통합한 융합적 문건이다. UNSF 2017-2021에서 특기할 사항은 '4가지 전략적 핵심 사안이 상보적(four thematic focus areas supporting and reinforcing each other)'이며,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을 목표로 하여 작성됐다는 데 있다(UN/DPRK, 2016, p. 12).

한편 UNSF 2017-2021이 UNSF 2011-2015와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은 북한 정부와 유엔 양자의 협력 사업 전반에 적용해야 하는 7가지 사업 기획 원칙과 고려 사항인 ‘SDGs’, ‘HRBA’, ‘성평등(Gender Equality)’,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 Sustainability)’, ‘제도적 지속가능성(Institutional Sustainability)’, ‘복원력(Resilience)’, ‘성과 기반 관리(RBM: Result-Based Management)’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UN/DPRK, 2016, pp. 13-14). 사실 SDGs,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도적 지속가능성은 유엔의 대북 사업을 북한이 허용하는 데 크게 거부감이 없는 사안이지만, 그 이외의 원칙들은 과거 북한이 정권 유지의 위협 요소로 간주하여 강하게 거부하였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문경연, 2018, p. 12).

UNSF 2017-2021에서 기존의 북한이 체제 유지에 근간을 이루는 요소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UNSF 2017-2021이 유엔과 북한 중 일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측이 상호 협의한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나마 북한을 국제사회의 규범과 기준에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엔 기구들의 다양한 대북 개발 사업을 조화시키고 협력 사이클을 조정함으로써 개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정구연, 2017a, p. 147).

지금까지 살펴본 UNSF 2017-2021을 뒷받침하는 원칙들을 반영한 4가지 전략적 핵심 사안 및 성과 목표의 주요 내용은 <표 3-2>와 같다.

48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점에서의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 연구

〈표 3-2〉 UNSF 2017-2021 전략 우선순위 및 성과 목표

우선순위	세부 내용
1. 식량 및 영양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원예, 어업, 축산 부문에서 식량 생산, 생산성, 가공의 지속가능성 제고</li> <li>· 모든 가계가 언제든지 충분하고 다양한 식품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의 삶의 질을 제고</li> <li>· 가입기 여성, 5세 미만 아동, 노인 및 기타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 개선</li> </ul>
2. 사회개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주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과 외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일차의료 개선 및 일관되고 공평하며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보장</li> <li>· 전염·비전염성 질환, 특히 가장 취약한 여성과 아동들이 겪는 모성·유아 질환에 대해 개선된 의료서비스 제공</li> <li>· 보건 분야 긴급 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응 역량 강화</li> <li>· 가정, 교육기관, 의료시설, 특히 가장 취약한 가구와 집단들에 대해 적절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물·위생시설 보급</li> <li>· 유치원, 소학교, 중등학교, 3차 교육기관, 그리고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 부문에서 양질의 교육 제공 및 형평성 제고</li> </ul>
3.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및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지역공동체, 특히 여성을 포함한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및 대응력 제고</li> <li>· 지역공동체,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들의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li> <li>· 환경 관리, 에너지, 기후변화, 재난 위험 관리 부문에서 정부 기관들의 통합적이고 공평한 사업 수행</li> </ul>
4. 데이터와 개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기획 및 의사 결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인도·개발 분야 정보에 대한 접근과 가용성 제고</li> <li>· 국제 기술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북한의 역량 강화</li> <li>· 국제 조약, 협약, 기타 체계에 대한 북한의 준수 강화와 증거에 기초한 보고 체계 강화</li> </ul>

자료: UN/DPRK (2016). Country Team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 역,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을 향하여: U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 p. 26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또한 UNSF 2017-2021은 SDGs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이를 북한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적용할지에 대한 세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UNSF 2017-2021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SDG 2, 3, 4, 5, 6, 7, 9, 11, 12, 13, 15에 집중하기로 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3>과 같다(UN/DPRK, 2016).

<표 3-3> SDGs의 목표가 적용된 전략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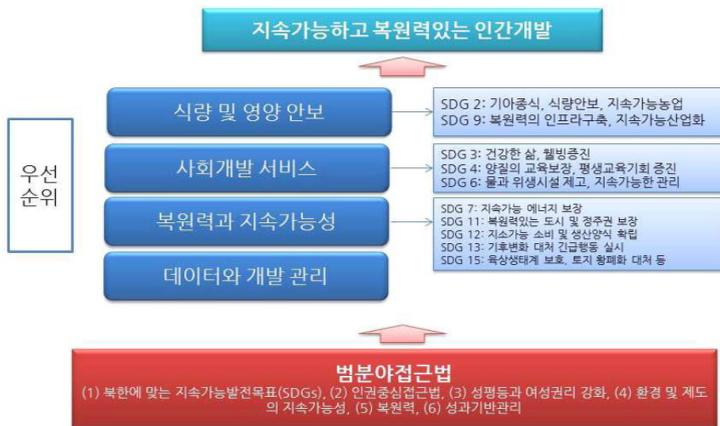
우선순위	세부 내용
1. 식량 및 영양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며,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li> <li>· SDG9: 복원력 있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도모하며, 혁신을 장려한다.</li> </ul>
2. 사회개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li> <li>· SDG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li> <li>· SDG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li> </ul>
3.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7: 모두를 위해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li> <li>· SDG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를 조성한다.</li> <li>· SDG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확립한다.</li> <li>· SDG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행동을 실시한다.</li> <li>· SDG15: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막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억제한다.</li> </ul>

자료: UN/DPRK (2016). Country Team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 역,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을 향하여: U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 pp. 15-20.

5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점에서의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 연구

이에 더해 UNSF 2017-2021은 각각의 전략 우선순위 이외에도 앞서 살펴본 사업 기획 원칙에도 SDGs의 목표를 적극 반영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UNSF 2017-2021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UNSF 2017-2021의 사업 내용 흐름도



자료: 김태균. (2017). 유엔북한 전략계획 2017-2021: 함의 및 전망. 신정부의 대북지원 정책방향 모색 및 대북지원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p. 42.

## 2. 관리와 평가(Management and Evaluation)<sup>6)</sup>

UNSF 2017-2021의 사업들은 북한의 담당 기관이 전반적으로 관리 하며, 사업을 지원하는 유엔 기구들은 모든 해당 부처, 단체, 정부 기관, 수혜자들과의 접촉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관리 체계에 근거하여 유엔상 주조정관과 북한 정부의 지도 아래 있는 유엔북한팀은 전략계획을 실행 하는 데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물론 UNSF 2017-2021의 사업들은 구 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유엔 사업은 북한 정부,

6) 이 부분은 UN/DPRK(2016), pp. 22-25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적용 가능한 기금들과의 개별적인 합의를 통해 지지되고 구현된다.

그러나 2017-2021은 유엔의 활동을 파악하는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통합적 사업 추진을 위한 표준 이행 절차를 따른다. 많은 경우 유엔의 사업은 개별적인 합의를 통해 구현되지만, 2017-2021에 기초한 사업은 일관성 있고, 적절히 조정되고, 실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별 사업들이 추진된다.

위에서 살펴본 관리 체계와 함께 UNSF 2017-2021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관리 체계의 주요 특징으로는 ‘조정 메커니즘(coordination mechanisms)’, ‘필요 자원(resources required)’, ‘유엔전략계획 정기 검토(periodic review of this UNSF)’가 있다. 먼저 조정 메커니즘은 외무성 국가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유엔상주조정관이 공동 의장으로 있는 UNSF 운영회가 담당한다. 다음으로 유엔 대북 사업은 ‘유엔중앙긴급 구호기금(CERF: UN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유입되는 ‘비핵심기금(non-core funding)’, 이에 더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Global Vaccine Alliance)’, ‘에이즈·결핵·말라리아를 위한 글로벌펀드(GFATM: Global Fund for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몬트리올 의정서 실행을 위한 다자기금(MLF: Multilateral Fu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real Protocol)’ 등과 같은 다국적 기금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UNSF 2017-2021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구성되었다. 사실 UNSF 2017-2021이 유연하게 구성된 것은 유엔 대북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정 상황의 불확정성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와 기회들, 우선순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UNSF 2017-2021은 기존에 상정한 목표와 우선순위가 얼마나 달성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정기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에는 개별 평가에 근거한 중간평가(a Mid-Term Review)가 진행된다.

UNSF 2017-2021의 또 다른 주요 관리 체계로는 체계화된 모니터링과 평가 절차를 들 수 있다. ‘유엔전략계획 결과표(UNSF Results Matrix)’, ‘사업 목표 및 기준치 데이터(Targeting and Baseline Data)’, ‘타당성 검증 및 확인(Validation and Verification)’, ‘독립 평가(Independent Evaluation)’가 바로 그것이다. 이 네 가지 절차를 통해 UNSF 2017-2021은 유엔북한팀의 모니터링 및 평가 활동이 일관되고 협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3절 유엔전략계획과 북한의 변화

UNSF 2017-2021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개발협력정책을 연계하여 작성된 북한과 유엔 간 협력 로드맵이다. 따라서 UNSF 2017-2021은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보다는 개발 지원(development assistance)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 차원보다는 NGO, WFP, UNESCO, WT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UNSF 2017-2021에 기초하여 유엔의 대북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유엔이 제시하는 개발협력의 규범이 북한에 받아들여질 것인가이다. 이때 규범이란 공여국 관점에서 수원국에 대한 개발협력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축적해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규범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 혹은 대응할 것인지 식별하는 것은 대북 개발협력의 성패를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정구연, 2017b, pp. 354-355).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UNSF 2017-2021은 북한 정부가 유엔이 어떠한 영역에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한 문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유엔의 역할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원조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칙, 가치 그리고 규범 등을 북한과 공유하는 데 있다(정구연, 2017a, p. 140). 이에 UNSF 2017-2021에서 북한 정부와 유엔은 유엔 대북 사업의 목표를 ‘북한 주민, 특히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당국의 활동을 돕고 강화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네 가지를 전략 우선순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UN/DPRK, 2016, p. 8).

또한 북한 정부와 유엔은 주요 사업 기획 원칙으로 SDGs와 HRBA를 채택했는데, 이는 그동안 북한이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북한 정부와 유엔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 그룹,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혜자 선정을 비롯한 사업의 구상 및 실행의 전 과정에서 HRBA를 취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더해 유엔은 전략 우선순위 4(데이터와 개발 관리)에서, 특히 인권 분야에서 국제 규범 및 표준을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 협약과 메커니즘의 이행, 정기 보고 등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UN/DPRK, 2016, pp. 10, 13, 21).

다른 한편으로 UNSF 2017-2021은 UNSF 2007-2009, UNSF 2011-2015와 마찬가지로 식량 및 영양안보와 사회개발 서비스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식량·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김정일 정권은 선군정치를 내세웠음에도 식량안보·공중보건·교육을 비롯해 북한 주민을 위한 복지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선군 정권의 사회정책 핵심은 식량안보를 개선하는 것이었고, 식량안보정책의 대상이 되는 핵심 사회계층은 아동이었다(Smith, 2015/2017, p. 284).

물론 최근 들어서는 북한 정부의 관심과 국제사회의 지원, 그리고 시장화가 함께 맞물려 북한에서 산모와 영유아의 사망률과 영양 상태가 꾸준히 개선되었으며, 아동의 건강 상태도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식량 및 영양안보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선군 정권의 급격한 사회정책 조정은 복지의 시장화라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Smith, 2015/2017, p. 303). 따라서 북한 취약계층의 식량 및 영양 상태는 지역별, 계층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황나미, 2012, p. 69; 조성은 외, 2018, pp. 31-53).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면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정책은 북한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다. 또한 UNSF 2017-2021의 전략 우선순위 3(복원력과 지속가능성)에서 지적하듯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의 식량 및 영양안보 부문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식량 및 영양안보와 사회개발 서비스 제고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에 더해 북한 내 활동에 대한 제한적인 모니터링 허용으로 유엔의 대북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 측정을 불가능하게 했다.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 개혁 의지가 없다는 점 역시 북한에 대한 유엔 개발협력의 한계로 지적됐다(정구연, 2017a, p. 147).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UNSF 2017-2021은 북한 정부와 유엔 간에 합의한 매우 진일보한 유엔 대북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로드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UNSF 2017-2021은 기존 유엔전략계획과 마찬가지로 식량 및 영양안보와 사회개발 부문을 강조했지만, 유엔의 대북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북한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성과 기반 관리(Result-Based Management)를 강조했다. 특히 기존 유엔전략계획과 달리 사업 기획 원칙에서부터 지속가능성과 성과 기반 관리가 채택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UNSF 2017-2021은 기존 유엔전략계획과 달리 전략 우선순위에서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개발 관리를 별도로 채택했다. 사실 북한에서 유엔의 활동 목표는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지만, 이는 북한 정부의 체제 개혁 의지가 있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물론 북한 정부의 체제 개혁을 수반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지만, UNSF 2017-2021 전략 우선순위에서 채택한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은 그동안 북한이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등에 따라 복원력이 제고되지 못했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전략 우선순위 4에서 채택한 데이터와 개발 관리 부문의 핵심이 유엔이 관련 증거와 국제적으로 공개된 분석 및 경험에 기초해 북한 정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이다(UN/DPRK, 2016, p. 20). 이는 UNSF 2017-2021이 단순히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개발협력 지원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유엔이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유엔이 북한 정부가 국제 규범 및 표준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북한의 복원력 제고가 북한 자체의 노력 없이는 힘들며 이러한 점에 북한 정부도 합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UNSF 2017-2021은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개발 관리에 더욱 집중하면서 북한 취약계층의 식량 및 영양안보와 사회개발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을 목표로 북한 정부와 유엔북한팀이 합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의 5대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파리선언이 제시한 공여국과 수원국이 따라야 하는 개발협력의 5대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둘째, 수원국의 개발 전략에 공여국 원조의 일치(Alignment). 셋째, 공여국 간 원조 조화(Harmonization). 넷째, 결과 중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 및 의사결정(Managing for results). 다섯째, 공여국과 수원국 간 상호 책임성 강화(Mutual accountability)(OECD, 2005). 이 중 넷째 성과 지향적 관리와 다섯째 상호 책임성 부분에 북한 정부와 유엔북한팀이 합의했다는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규범과 기술표준, 관행 등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기된 UNSF 2017-2021은 기존의 유엔의 대북 사업과 북한 인권정책이 압박 위주의 과도한 조치에서 벗어나 북한 정부와 유엔북한팀이 상호 합의하에 북한에서 진행될 유엔의 활동과 관련하여 합의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매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북한 정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유엔 대북 사업의 원칙과 가치, 표준, 노하우를 전수하는 로드맵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북한 정부 스스로 북한 주민들의 영양 및 식량안보, 그리고 열악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범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유엔의 개발협력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원국으로서 북한이 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 4 장

## 지속가능개발목표 관점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의 과제

제1절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추진 배경

제2절 남북 교류·협력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관점에서의 주요 과제



# 4

## 지속가능개발목표 관점에서의 << 남북 교류·협력의 과제

### 제1절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추진 배경

#### 1.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추진 배경

2015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회 유엔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결과 문서를 채택하였다(UN, 2015). 이 문서에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빈곤 해소, 불평등 완화, 인권 신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공동의 목표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담고 있다. 2012년부터 정부 대표, 학계,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스트 2015 발전의제’ 논의 과정에 참여하였고, 최종 문안 채택에 이르기까지 유엔과 정부 간 협상이 2015년 1월부터 8개월 동안 이어졌다.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 퇴치 노력을 이끌어 온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새롭게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새천년개발목표’의 성과와 한계

2000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밀레니엄 정상회의는 ‘새천년선언(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UN, 2000)’을 채택하고, 전 세계

극빈과 기아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듬해인 2001년 유엔은 빈곤 퇴치를 위한 전 세계 차원의 개발목표들을 ‘새천년개발목표(MDGs)’라는 이름하에 ① 극심한 빈곤과 기아 감소, ② 모든 어린이의 초등교육 보장, ③ 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④ 아동 사망률 감소, ⑤ 모성 건강 증진, ⑥ HIV/AIDS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 퇴치, ⑦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⑧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증진으로 구성된 8개 목표로 구체화하였고,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돕기 위한 세부 지표들을 제시하였다(UN, 2001, pp. 55-58).

‘새천년개발목표’는 빈곤 문제가 개별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 의제로 자리 잡도록 중요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소득뿐 아니라 영양, 교육, 보건, 식수·위생, 성평등 등 빈곤의 다양한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원조 중심의 국제 개발 패러다임을 인간 중심의 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체제로 이행하는 전환점’이 되었다(이창언, 오유석, 2017, p. 168). ‘새천년개발목표’는 빈곤 감소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5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생계를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빈층 인구가 1990년 19억 명에서 2015년 8억 3600만여 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2000년 1억 명에서 2015년 5700만 명으로 거의 절반에 가깝게 줄었다(UN, 2015, p. 4).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감소, 식수 및 위생 접근성 증진 등도 많은 국가에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UN, 2015, pp. 5-7).

하지만 ‘새천년개발목표’가 종료된 2015년, 극빈 해소의 과제는 마무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평가되었다. 여전히 8억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1억 6,000만 명가량의 5세 미만 아동들이 영양 결핍 상태에 놓여 있으며, 5천 700만여 명의 학령기 아동

이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천년개발목표’하에서는 사회불평등, 더 특별히 취약한 사람들의 상황 개선 과제가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한 한계로 드러났다.(UN, 2015, p. 8)

## 나. 포스트 2015 글로벌 발전 방향 논의

2012년 유엔 사무총장은 지역과 젠더 균형을 고려하여 정부, 민간, 학계, 시민사회와 청년 대표 26명으로 ‘포스트 2015 발전목표에 대한 저명 인사 고위급 패널(이하 ‘포스트 2015 고위급 패널’)

을 구성하여 ‘새천년개발목표’가 종료되는 2015년 이후 새로운 글로벌 발전목표에 대한 자문 의견 제공을 요청하였다. ‘포스터 2015 고위급 패널’은 2000년 ‘새천년선언’, 2012년 ‘리오+20 결과 문서’,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평가, 포스트 2015 발전목표에 대한 여러 국가와 지역의 정부, 의회,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의 제안을 토대로 2013년 9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빈곤 퇴치와 경제의 전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포스트 2015 고위급 패널’은 ‘새천년개발목표’하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단시간 내 빈곤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새천년개발목표’의 한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UN, 2013).

“‘새천년개발목표’는 최빈층과 가장 배제된 사람들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충분히 초점을 두지 않았다. 분쟁과 폭력이 발전에 미치는 파괴적 효과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법의 지배, 표현의 자유, 개방적이고 책무성을 지닌 정부를 보장하는 좋은 거버넌스와 제도가 발전에 갖는 중요성도, 일 자리를 제공할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도 포함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새천년선언’이 비전으로 제시했던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적, 사회

적, 환경적 측면들을 통합하지 못하였고, 소비와 생산의 지속가능한 패턴을 증진할 필요성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환경과 발전의 문제가 함께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UN, 2013, Executive Summary)

‘새천년개발목표’의 성과와 한계,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포스트 2015 고위급 패널’은 포스트 2015 발전목표를 이끌어야 할 다섯 가지 중요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UN, 2013, Executive Summary). 첫째, 절대적 빈곤의 감소에서 이제는 절대적 빈곤의 퇴치로 나아가야 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민족, 젠더, 지역, 장애, 인종 등과 관계없이 보편적 인권과 기본적인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심에 두어 인류에 전례 없는 위협을 가하는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를 중단시켜야 한다. 셋째, 절대적 빈곤의 퇴치와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포용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평화를 구축하고, 효과적이고 개방적이고 책무성을 지닌 좋은 거버넌스를 건설하는 것은 안녕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다섯째,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토대로, 개발원조를 넘어선 재정 조달의 틀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포스트 2015 고위급 패널’은 이러한 다섯 가지 방향 속에 2015년 이후 글로벌 발전목표는 모든 사회가 관여하고 함께하는 ‘보편적 의제’로서 실천되고 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UN, 2013, Executive Summary).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SDGs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 적용되는 보편적 의제이다. 사회 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전과 좋은 거버넌스의 증진을 포괄하는 통합적 발전을 지향한다. 빈곤 퇴치뿐 아니라 불평등 감소를 중심 목표로

삼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Leave no one behind)’에 강조점을 둔다(UN, 2015). 재원과 관련해서는 ‘새천년개발목표’가 공적개발원조에 의존하였다면, SDGs는 공적개발원조와 더불어 국내 공공재원(세금), 민간재원(무역,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재원 마련을 추구하도록 하였다(이창언, 오유석, 2017, p. 176).

## 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주요 내용

SDGs는 2030년까지 빈곤을 종식하고 지속가능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 그리고 각 목표 달성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UN, 2015). 이러한 목표들은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사회 발전, 환경보전, 경제 발전, 정의와 평화 실현을 통합적으로 추구하고, 이러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 체제를 촉진하는 것이다.

〈표 4-1〉 SDG 17개 목표

SDG 17개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 상태의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6) 모두에게 물과 위생설비의 가용성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7) 모두에게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 보장
(8)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1)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 보장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SDG 17개 목표

-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 (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 (15) 육상 생태계 보호·복원·증진, 삼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및 복구, 생물 다양성 손실 중단
- (16)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의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 (17) 이행 수단 강화,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자료: 환경부. (2018).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p.42. (<http://ncsd.go.kr/api/unsdgs%EA%B5%AD%EB%AC%B8%EB%B3%B8.pdf>)에서 2019. 4. 1. 인출.

이 중 특히 보건복지 관련 목표는 ① 빈곤 퇴치, ② 기아 종식, ③ 건강권 증진, ④ 양질의 교육 보장, ⑤ 성평등, ⑥ 물과 위생설비 이용 보장, ⑩ 불평등 감소이다. 이들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 목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sup>7)</sup>

### 가. 지속가능개발목표 1-빈곤 퇴치

SDG 1은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목표로 하며, △2030년까지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절대빈곤 상황 근절(1.1), △2030년까지 국가별 빈곤선에 따라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일 것(1.2), △사회안전망을 포함해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보장 체제를 수립·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1.3) 등을 세부 목표로

7) 이하의 내용은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분석으로 한국어 번역본은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app/sub07/201.do>)에서 2019. 4. 1. 인출)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세부 목표에 대한 분석이 주이므로 세부 목표를 언급할 때는 별도의 직접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서술하였다. 괄호 안의 숫자와 기호는 세부 목표의 번호를 뜻한다.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들의 빈곤 종식 정책 이행을 돕기 위하여 개발협력 증진 등 다양한 원천의 자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1.a)을 약속하고 있다. SDG는 절대빈곤의 감소가 아니라 종식을 목표로 하였고, 빈곤 해소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최빈층이나 취약계층이 소외·배제되는 상황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두가 소득 상실 등 주요 사회적 위협에 대비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성하에 관련 내용도 세부 목표에 포함하고 있다.

#### 나. 지속가능개발목표 2-기아 근절

SDG2는 기아 종식을 목표로, △2030년까지 기아 상태를 근절하고, 영유아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2.1),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앨 것, 이 과정에서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및 체력저하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모유 수유 여성 및 노년층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영양상의 문제가 다루어지도록 할 것(2.2),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 현상,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하며 회복력 있는 농업 원칙을 이행할 것(2.4) 등을 세부 목표로 한다.

#### 다. 지속가능개발목표 3-건강한 삶 보장과 안녕 증진

SDG 3은 모두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모성 사망 비율을 10만 건의 생존출산당 70건 미만으로 줄일 것(3.1),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없애고, 모든 국가는 신생아 사망을 1000건의 생존출산당 12건, 5세 미만 사망을 1000건의 25건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지향할 것(3.2),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 유행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감염성 질병을 퇴치할 것(3.3),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 줄이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것(3.4), △가족계획,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을 포함해 성과 재생산 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3.7), △의료비 부담에 대한 관리를 포함해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안전하고 교화적이며 가격이 적절한 양질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할 것(3.8), △유해 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지, 공해 및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건수를 상당히 줄일 것(3.9)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해,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규범, 제도, 자원 측면에서의 방안도 동반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적정 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3.b), △개발도상국의 보건 재정과 보건 인력의 채용, 개발, 훈련, 보유를 대폭 확대할 것(3.c), △특히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국가적, 세계적 보건 위협에 대한 조기 경보, 위험 감축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것(3.d)과 같은 조치가 그러한 내용이다.

## 라. 지속가능개발목표 4-양질의 교육 보장

SDG 4는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2030년까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형평성 있는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이수를 보장할 것(4.1),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것(4.2),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 교육, 직업 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보편적이고도 평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4.3),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기술 등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릴 것(4.4),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할 것(4.5), △모든 청소년과 대다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할 것(4.6),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 개발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 개발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할 것(4.7) 등을 달성해야 할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 장애,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며, 모두에게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4.a), △2030년까지 교사 양성을 위한 국제 협력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릴 것(4.c) 등을 필요한 조치로 설정하였다.

## 마. 지속가능개발목표 5-성평등 증진

SDG 5는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를 목표로, △여성 및 여아 대상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앨 것(5.1), 공사 구분 없이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여아 대상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앨 것(5.2),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보장정책, 가구와 가족 내 책임을 함께 나눔으로써 무급 돌봄 및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식할 것(5.4), 정치, 경제, 공공 부문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5.5), 성과 재생산 건강과 재생산권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혁할 것(5.6) 등을 세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권익 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채택하고 강화하여야 한다(5.c).

## 바. 지속가능개발목표 6-물과 위생

SDG 6은 모두가 물과 위생설비를 이용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게 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내용으로 2030년까지 △모두가 적정 가격으로 안전한 식수를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6.1), △특히 여성과 여아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필요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적절하고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공중위생과 개인위생에 대한 모두의 접근을 보장할 것(6.2), △오염 저감, 유해물질의 투기 근절과 배출 최소화, 미처리 폐수 비율 반감, 전 세계 재활용과 안전한 재사용 증진을 통해 수질을 개선할 것(6.3), 물 사용 효율을 증가시키고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담수의 지속가능한 취수와 공급을 보장하며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시킬 것(6.4) 등을 달성해야 할 세부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이행을 위해 물과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서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a).

#### 사. 지속가능개발목표 10-불평등 완화

SDG 10은 국내적, 국제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부 목표로는 2030년까지 하위 40% 인구의 소득 성장을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할 것(10.1), 나이, 성별, 장애 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적 또는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참여를 강화, 증진할 것(10.2), 차별적인 법률,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 증진 등을 통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시킬 것(10.3), 재정, 임금, 사회보장정책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할 것(10.4) 등을 포함한다.

### 3.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인권의 연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지향하는 방향이나 기초가 되는 원칙 면에서 모두 인권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개발의 제’ 결과 문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인권과 인간의 존엄, 법의 지배, 정의, 평등과 비차별에 대한 보편적 존중”이 실현되는 세상을 지향한다(UN, 2015, p. 4). 또한 SDGs가 모두 명시적으로 인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

나, “모두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UN, 2015, p. 1). 개별 목표들을 보면 SDG 1(빈곤 종식)은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SDG 2(기아 종식)는 식량권, SDG 3(건강 보호와 증진)은 건강권, SDG 4(양질의 교육 보장)는 교육권, SDG 5(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여아의 역량 강화)는 직접적으로 성평등 및 여성의 인권, SDG 6(식수와 위생시설 접근 보장)은 물에 대한 권리, SDG 8(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은 노동권,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노동삼권, SDG 10(불평등 완화)은 차별 금지와 평등, SDG 16(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정의에 대한 접근, 효과적이고 포용적이며 책무성 있는 제도 구축)은 차별 금지와 평등, 기본적 자유, 정보접근권, 사법접근권 등의 실현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Golay, 2018; 이성훈, 2017).

## 제2절 남북 교류·협력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관점에서의 주요 과제

### 1. 남북 교류·협력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관점의 의의

남북 교류·협력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하는 발전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SDGs에 대해 북한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9월 유엔 상주조정관 유엔북한팀과 북한 국가조정위원회 외무성은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을 향하여 -유엔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UN/DPRK, 2016)을 채택하였다. 이 문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 내 유엔 활동의 우선순위와 그에 따른 활동 계획을 담고 있다.

이 유엔전략계획이 활동의 바탕이 되는 기본 관점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인권 기반 접근, 젠더 평등과 여성 권익 신장 등을 채택했다는 점이 향후 남북 교류·협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새로운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현지화”하고, “프로그램 전반에서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인권 기반 접근을 적용”하며, “젠더 평등과 여성의 권익 신장을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UN/DPRK, 2016, p. 8),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교류·협력 제안이 당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에서도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다.

첫째, 지속가능개발목표는 북한 정부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모두가 합의한 약속이므로 북한 정부는 이를 달성해야 할 의무를 진다. 북한 정부 역시 여러 차례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둘째, 지속가능개발목표는 단기적인 인도적 상황 개선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인권과 밀접한 연계성도 있어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장단기적 사회 발전과 인권 증진을 이끄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사회권 관련 주요 의제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 촉진을 위한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다. 자유권 중심의 인권 논의에서 사회권 중심의 인권 논의로 북한 인권 의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유엔전략계획이 말해 주듯이 북한 정부와 유엔 기구들이 합의한 협력의 기본 틀이자 원칙으로,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도 대북 교류·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에 조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 등에 의한 대북 제재 조치가 실시되고 있어 대북 교류·협력의 내용과 방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의제 실현은 대북 교류·협력을 정당한 범위에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의 폭을 넓힌다.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관점은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에서 주요한 접근 프레임이라는 가치를 가진다. 특히 현재 북한이 유엔과 협의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목표들이 가시적인 교류·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목표들과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류·협력의 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2. 보건복지 관련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현 과제와 남북 교류·협력

앞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과 유엔이 합의한 2017-2021 전략계획의 네 가지 주요 영역 중 보건복지 교류·협력과 특히 관련성이 높은 것은 ① 식량과 영양, ② 사회서비스 분야이다. 각각의 영역에서 SDGs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어떤 과제들이 제시되었는지 살펴보고,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모색해 본다.

### 가. 전략적 우선순위 1-SDG 2, 3, 6, 9

전략적 우선순위 1의 식량과 영양 보장은 SDG 2인 기아를 근절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으며,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적절한 위생설비 및 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SDG 3, SDG 6)과 회복력 있는 기반 시설, 지속가능한 산업화와 혁신(SDG 9)도 요구한다(UN/DPRK, 2016, p. 16). 기아의 종식과 영양 결핍의 개선은 북한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모든 사람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권고 중 북한이 수용한 내용이기도 하다(UN/DPRK, 2016, p. 16). 유엔전략계획은 식량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자체적으로 식량 생산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현재의 식량과 영양 차원의 즉각적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과제도 놓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양의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동, 임산부 혹은 수유 중인 여성, 노인 등 취약집단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것 또한 세부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세부 목표에 적합한 남북 교류·협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영유아, 아동, 여성, 노인 등 취약집단의 기아 및 영양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한 인도적 지원·협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식량자급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 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의 긴급한 식량난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일부 계층의 영양 상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UNICEF의 2017년도 조사에서도 만성영양부족인 영유아의 비율이 19.1%로 나타났다(UNICEF, 2018). 영유아의 영양 개선은 장기적인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양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분유나 식량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기, 난방시설의 개선, 안전한 식수 제공 등과 같은 인프라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SDG 6의 실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북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44항에서도 안전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접근 증진이 강조된 바 있다(국제아동인권센터, 2017, p.30).

SDG 2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남북 교류·협력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우선 지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장기적으로 한반도 인구의 질을 높이고, 과거 식량 지원의 군 전용 논란과 같은 남한 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과 여성의 생명권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한 대화 및 협력은 북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37항에도 포함되어 있으며(국제아동인권센터, 2017, p.25), WHO, UNICEF, FAO 등의 기술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표 4-2〉 영유아 우선의 교류·협력 방안

분야		북한 영유아 실태	교류·협력 방안
건강·영양	모유 수유	- 모유 수유 비율 99.6%	- 모유 수유를 못 하는 산모를 위한 분유 지원 * 분유는 끓는 물이 필요하므로 전기, 난방시설 설치
	발육 상태	- 만성영양부족 19.1%	- 취약지역, 저소득 가정에 의약품 지원
	임신·출산	- 모성 사망률도 개선됨(파산풍면역 84.1%) - 병원 출산 시, 이불, 옷, 음식, 빨감 등을 가지고 가야 함.	- 모성 사망률 0%를 위해 취약지역, 저소득 가정에 의약품 지원 - 산원에 물품 지원
위생	영유아 배설물 처리	- 땅에 묻거나 투척하는 등 비위생적 방법	- 화장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 * 쓰레기 소각시설이 미비하므로 일회용 기저귀 지원은 지양
	식수	- 농촌 식수 오염 가구 45.2% - 우물을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먹는 비율 83.2%	-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자료: 북한 실태는 UNICEF. (2018). 2017 DPR Korea MICS, 교류·협력 방안은 저자 작성.

한편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영유아 이외에도 가임기 여성 등의 영양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 최근 국제사회는 식량 지원 대신 영양 지원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식용 식량 이외에 미량 영양소 보충을 중요하게 다룬다. 따라서 주식용 식량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공급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러한 영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과제로 〈표 4-3〉과 같은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표 4-3〉 세계 영양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과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임산부 및 아기 엄마	- 출산 전 미량 영양소 보충 ★ - 영양 카운슬링(식이 교육 및 모유 수유 장려) ★ - 임산부를 위한 균형적인 에너지·단백질 보충 - 말라리아 빈발 지역에서 임산부 말라리아 예방 처치 ★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타민 A 보충 ★</li> <li>- 질병 예방을 위한 아연 보충</li> <li>- 보충적 식품의 공적 공급</li> <li>- 심한 급성 영양부족 치료 ★</li> <li>- 보충적 식이 교육</li> <li>- 모유 수유 장려 ★</li> </ul>
가임기 여성 및 일반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19세 여학생을 위한 철분 및 엽산 보충 ★</li> <li>- 비임산부 여성을 위한 철분 및 엽산 보충</li> <li>- 주식 영양 강화(밀과 옥수수) ★</li> <li>- 주식 영양 강화(쌀)</li> </ul>

주: ★는 우선적 추진 과제.

자료: Meera Shekar, Jakub Kakietek, Julia Dayton Eberwein, and Dylan Walters. (2017). *An Investment Framework for Nutrition: Reaching the Global Targets for Stunting, Anemia, Breastfeeding, and Wasting* (Washington, D.C.: World Bank), pp. 147~149의 Table 7.4 and 7.6을 정리한 홍제환, 김석진, 정은미. (2018).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p. 167, <표 V-1>.

이러한 식량과 영양 분야 교류·협력에서는 북한과 협력하는 국제기구 등의 다양한 활동가들과 협의하고 조율하여 북한 주민 식량권 증진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 나. 전략적 우선순위 2-SDG 3, 4, 6

전략적 우선순위 2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SDG 3 건강과 안녕의 증진, SDG 4 양질의 교육 보장, SDG 6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 보장에 대한 것이다(UN, 2016, p. 18). 이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권 상황 개선 권고 중 “사람들이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계속 증진할 것”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UN, 2016, p. 19).

유엔전략계획에 따르면 북한은 보건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기본적인 의료기기와 약품 등의 부족과 의료기술의 낙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로 진단된다(UN, 2016, p. 18).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모성 사망, 영유아 사망, 기대수명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결핵 등의 감염성 질환과 더불어 이제는 심혈관계질환, 고혈압, 암 등 비감염성 질환이 새로운 보건상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UN, 2016, p. 19). 따라서 세부 목표로 취약집단과 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가 보편적으로 건강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 모성 및 아동 건강 분야에서 더 나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응급 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UN, 2016, p. 19).

이러한 보건서비스의 과제는 이미 북한이 WHO와 합의한 협력 전략에도 반영되어 있다. WHO는 2004~2008년, 2009~2013년 전략에 이어 2014~2019년까지 목표로 한 국가 협력 전략(Country Cooperation Strategy 2014~2019)을 제시하였다. WHO의 국가 협력 전략은 5개의 전략 방향에 따라 WHO 및 국제사회의 우선 지원 분야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WHO는 보건의료 부문의 최우선 지원 분야로 ①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통제를 들었다. 그다음으로는 ② 취약성을 낮추고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성 및 아동 건강 수준 개선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고, 그다음으로는 ③ 감염성 질환 예방 및 통제를, 그다음으로는 ④ 서비스 제공 개선을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⑤ 지속 가능한 국가 건강 개발을 위한 WHO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WHO, 2016)

2013년까지는 ① 서비스 제공 개선, 정책 및 계획 수립 역량 개발, 발전을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의약품, 백신, 의료용품 현지 생산 등)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그다음으로 ② 모성 및 아동 보건 개선, ③ 감염성 질환(결핵, 말라리아, B형 간염, 예방접종, 기생충, 신종 질환 등), ④ 비

감염성 질환(암, 뇌심혈관계질환, 흡연), ⑤ 건강 결정 환경적 요인 해결 (홍수, 가뭄, 수질, 기후변화, 보건영양 등)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것에 반해(WHO, 2010), 최근 WHO 전략에서는 감염성 질환보다는 비감염성 질환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감염성 질환 또한 북한의 주요 건강 문제이긴 하지만 감염성 질환 못지않게 비감염성 질환 또한 중요한 문제로 시각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모성 및 아동의 건강 문제와 서비스 제공 개선을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 또한 북한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문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략별 주요 해결 전략은 <표 4-4>와 같다.

<표 4-4> WHO 보건의료 부문 대북 지원 전략(2014~2019) 방향 개요

우선순위	전략	주요 해결 전략
1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감염성질환 감시 및 비감염성질환의 통합적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 전략계획 이행 지원</li> <li>부문 간 조치와 MPOWER measure package 시행을 통한 담배 통제에 관한 국가 당국 지원</li> </ul>
2	취약성을 낮추고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성 및 아동 건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산부 건강 증진, 산과적 치료 및 신생아 관리 개선, 사망률 감소 및 MDGs 4 및 5 달성을 위한 노력 지원</li> <li>일차 진료 및 병원 수준에서 아동기 질병의 통합 관리(IMCI)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지원</li> <li>국가 재생산 건강 전략의 이행 및 발전을 위한 기술 지원</li> <li>건강, 영양 및 위생 분야의 건강 클러스터 협력 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li> <li>WHO, 유엔 전략적 틀(United Nations Strategic Framework) 및 국가 건강 전략에 건강을 위한 모든 위험 비상사태와 재난 위험 관리 통합</li> <li>지역적 벤치마크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건강을 위한 모든 위험 비상사태 및 재난 위험 관리 상황을 문서화하는 WHO 조사 도구 적용 지원</li> </ul>
3	감염성 질환 예방 및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 질병 감시 강화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 지원</li> <li>홍역, 소아마비, B형 간염 및 5가 백신에 대한 높은 예방접종 범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li> </ul>

우선순위	전략	주요 해결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을 하고(cMYP), 예방접종에 관한 다년간의 포괄적 계획에서 밝혀진 새로운 우선순위 백신 도입 지원</li> <li>• 결핵의 발견과 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 시스템 역량 강화</li> <li>• 말라리아의 이환율을 줄이고 제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추가 지원</li> <li>• 성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적 노력 지원</li> <li>•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 전략계획 이행 지원</li> <li>• 국제 문제와 관련된 공중보건 사건 탐지 및 대응에서 국가의 준비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보건규정(IHR 2005) 이행 지원</li> </ul>
4	서비스 제공 개선을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보건 분야 발전을 위한 종합 중기 전략계획에서 보건 분야의 파트너를 위한 정책과 전략적 방향 제시</li> <li>• 국가 표준을 업데이트하고 표준 운영 절차(SOP)를 개정하는 데 국가규제기관(NRA)과 국가통제실험실(NCL) 강화</li> <li>• 포괄적이고 통합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HMIS 강화</li> <li>• 건강, 특히 중간 관리 및 1차 의료 공급자 수준의 인적자원 개발</li> <li>• 1차 의료에서 의료서비스의 품질 표준 업데이트</li> <li>• 근거 기반 정책, 계획 및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양의학 및 전통 의학 연구 구축</li> </ul>
5	지속가능한 국가 건강 개발을 위한 WHO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HO가 촉진한 지역 및 국제 협력을 통한 건강 증진 파트너십 개선(강화)</li> <li>• 건강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상호 지원 개선(강화)</li> </ul>

자료: WHO. (2016). WHO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4-2019, pp. 36-45, 조성은 외(2018),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95~196에서 재인용.

이러한 전략목표들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보건 분야 남북 교류·협력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SDG 3의 세부 목표 중 하나인 보편적 건강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촉진하는 방향의 시스템적 접근을 요구한다. 보편적 건강 보장은 주요 지속가능개발목표에 해당하는 것이자 북한 정부가 비준한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상 건강권 실현 의무로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보편적 인권 규범과

개발목표에 근거해 보건의료 부문의 교류·협력에서 북한 정부의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북한 사회의 자체 건강 증진 역량을 키우기 위한 내용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정부 역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개발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필수 의약품 및 백신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성은, 2019).

전략적 우선 과제로 남북한은 가장 먼저 2차급 의료기관의 신축이나 재건, 현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2차급 의료기관이란 보통 시·군·구역 인민병원을 말하는데, 북한 전역에 2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인민병원들은 북한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북한 지역 의료서비스의 거점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다”(조성은 외, 2018, p. 215). 병원 이름 그대로 이들 병원은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진료를 받는 병원이다. 따라서 이 병원들의 기능을 복구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필수적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재개하는데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2차급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민간단체들의 보고서는 이 병원들의 기능이 매우 미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나눔인터내셔널, 2007). 이들 시·군 인민병원을 현대화하고 기능을 정상화하면 주민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의료 체계의 큰 장점인 호담당의사제와 1차 의료기관인 리·동 진료소, 종합진료소, 리인민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시·군 병원을 일반적인 병원 역할 외에 남한의 보건소 기능을 가지도록 기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과 건강 증진 활동을 추가하는 것이다. 북한은 원래 예방의학 중심이기 때문에 치료적 기능, 예방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론적, 경험적 배경이 뒷받침되어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의 전 단계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과 장애

아동 등 취약집단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영역에서의 자기 완결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수 및 위생 분야에서 모든 가정, 교육시설, 보건시설에서 식수 및 위생설비를 잘 갖추고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각각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역시 전반적인 북한 인프라의 개선이 요구되는 장기적 전략목표이다.

#### 다. 전략적 우선순위 3-SDG 7, 11, 13

전략적 우선순위 3에 해당하는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은 보건복지 교류·협력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전략 과제에서 강조하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개발을 통해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보건복지 교류·협력의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다.

보건복지 분야 남북 교류·협력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달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이 필수적이다. 여기에서는 인권과 개발협력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강조된다. 지속가능개발목표가 인권과 인간 존엄이 실현되는 사회를 지향하며,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에 기반을 둔 발전’은 사회발전 과정에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주민들이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게 참여하고, 주민들이 사회발전의 결과를 형평성 있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다(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6, pp. 15-16). 그리고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은 인권을 존중, 보호, 증진해야 할 협력 대상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UN, 2003). 공여국이 협력 대상국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하지 않고, 협력 대상국 자체가 인권을 증진하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미 북한과 유엔 기구들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인권 기반 접근을 적용하기로 유엔전략계획에서 합의하였다(UN, 2016, p. 8). 남북 교류·협력에서도 인권 기반 접근을 관점으로 하여 식량, 영양, 보건, 식수, 위생 등의 영역에서 북한 사회 전반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의 식량권, 건강권, 식수 및 위생에 대한 권리 등을 자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취약집단들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핵 문제의 해결, 남북 간의 광범위한 평화적 교류가 가능한 상황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제 5 장 결론



2016년 9월 1일 유엔상주조정관 유엔북한팀과 북한 국가조정위원회 외무성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을 향하여-유엔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전략계획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북한에서 진행할 유엔 활동에 대해 합의된 우선순위들을 담고 있는데,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현을 공통의 목표로 합의하였다(UN/DPRK, 2016). 이 중기계획의 기본적 프레임이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개발목표의 틀에서 앞으로 북한과 어떠한 교류·협력이 가능할 것인가를 탐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010년대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SDGs, 국제인권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남북 교류·협력 역시 이러한 북한의 흐름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때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유엔에 대한 태도를 노동신문 기사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파악한 북한의 유엔에 대한 태도의 특징은 다면성에 있다.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규탄하거나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로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다. 특히 2013년과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 제재 시기에 많은 기사들이 노동신문 지면에 실린 바 있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두드러진 북한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부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엔을 북한의 입장을 호소하는 일종의 외교적 채널로 다루는 경우들

이 발견된다. 유엔의 날 등을 기념하는 기사에서는 유엔의 신뢰 회복이나 공정성 등을 요구하면서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UNSF 2017-2021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북한 정부와 유엔이 주요 사업 기획 원칙으로 내세운 7가지에서 북한만의 특수한 지역 현실에 맞게 ‘SDGs’를 적용한다는 것과 프로그램 전반에서 인권 중심의 접근법(HRBA: Human Rights-Based Approach)을 채택한 데 있다(UN/DPRK, 2016, pp. 8-9). 이 중에서 북한 정부와 유엔이 HRBA를 취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그동안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으로 대표되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내정간섭 및 주권 침해로 인식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서 본다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 상주조정실 활동을 환영하며, UPR에서 수용한 검토 및 국제인권협약 의무 이행 후속 조치를 취하는 데 상주조정실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UN General Assembly, 2017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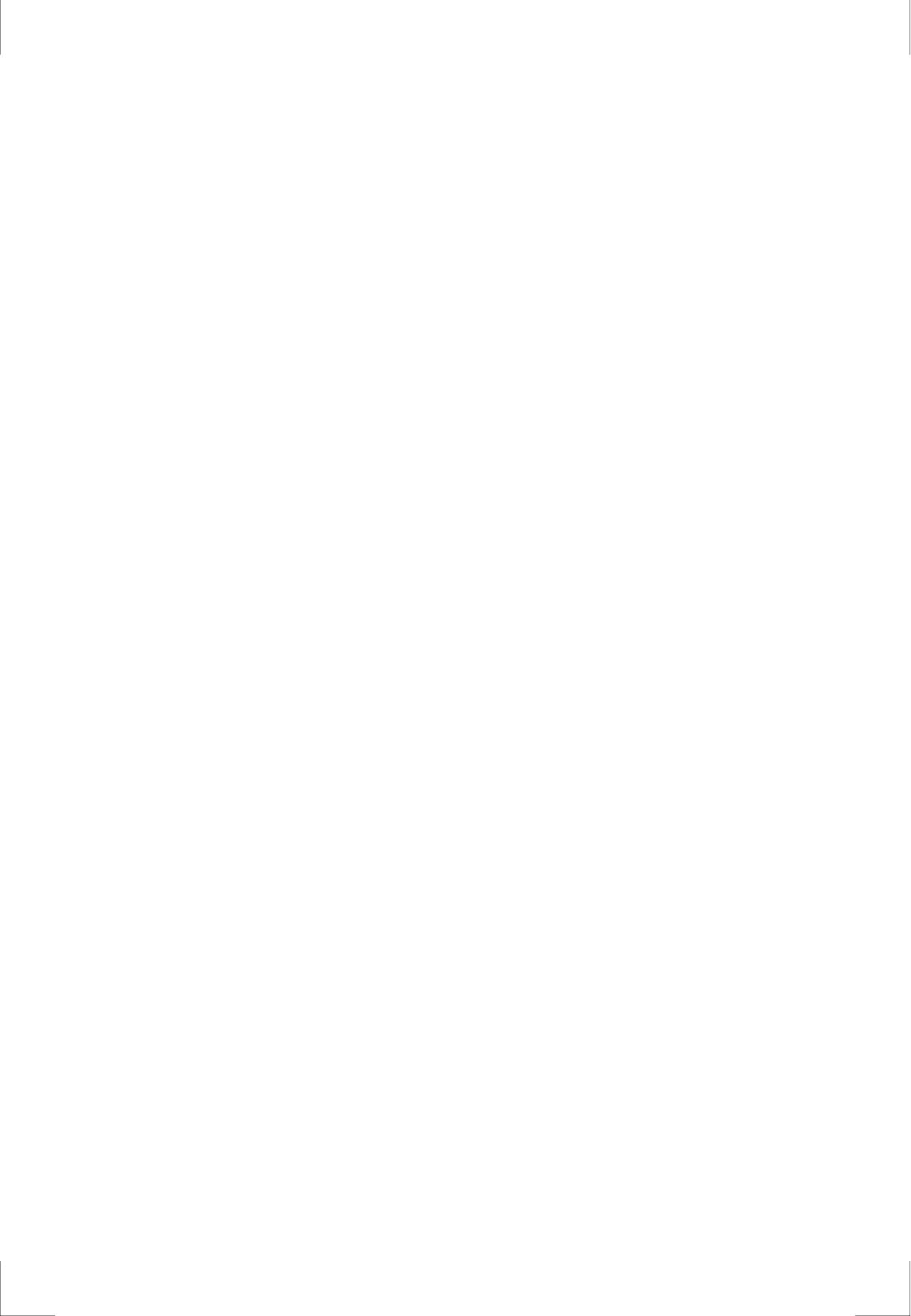
북한과 유엔이 합의한 2017-2021 전략계획의 네 가지 주요 영역 중 보건복지 교류·협력과 특히 관련성이 높은 것은 ① 식량과 영양, ② 사회 서비스 분야이다. 기아의 종식과 영양결핍의 개선은 북한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모든 사람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권고 중 북한이 수용한 내용이기도 하다(UN/DPRK, 2016, p. 16). 유엔전략계획은 식량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자체적으로 식량 생산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현재의 식량과 영양 차원의 즉각적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과제도 놓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양의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동·임산부 혹은 수유 중인 여성·노인 등 취약집단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것 또한 세부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조응해 남북 교류·협력에서도 영유아, 아동, 여성, 노인 등 취약집단의 기아 및 영양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협력, 식량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북한 사회의 역량 강화와 협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식량과 영양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하는 국제기구 등의 다양한 활동가들과 협의하고 조율하여 북한 주민 식량권 증진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보건복지 분야 남북 교류·협력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SDG 3의 세부 목표 중 하나인 보편적 건강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촉진하는 방향의 시스템적 접근을 요구한다. 보편적 건강 보장은 주요 지속가능개발목표에 해당하는 것이자 북한 정부가 비준한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상 건강권 실현 의무로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보편적 인권 규범과 개발목표에 근거해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에서 북한 정부의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북한 사회의 자체 건강 증진 역량을 키우기 위한 내용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정부 역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개발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필수 의약품 및 백신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보건 분야의 물적 토대를 개선하는 사업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므로 보건복지 교류·협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유엔 산하의 다양한 기구들은 북한 내에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 영역의 활동을 해 왔다. 그러한 경험은 국내의 공공과 민간 부문 활동과는 다른 맥락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수용성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욕구(needs)를 반영한 전략적 교류·협력은 향후 한반도 평화 정착과 변영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국제아동인권센터. (2017). **북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한글번역본). <https://drive.google.com/open?id=1CWR86pGax8Sn23VVAN3H6uVEcqDdrAre>에서 2019. 5. 15. 인출.
- 김수경. (2019). 북한에 대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UPR) 평가와 북한인권 증진 방향(온라인시리즈 CO 19-09).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2&searchField=title&searchText=&biblioId=1521739> 에서 2019. 5. 15. 인출.
- 김지현. (2016). **SDGs 지표 확정과 의의 (개발과 이슈 제25호)**. 서울: 한국국제협력단. [http://lib.koica.go.kr/bbs/content/4\\_3031?pn=4&](http://lib.koica.go.kr/bbs/content/4_3031?pn=4&)에서 2019. 5. 15. 인출.
- 김진아. (2015).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를 통해 본 유엔 인권메커니즘 동학에 관한 연구: 그 합의와 전망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31(1), 49-83.
- 김태균. (2017). 유엔북한 전략계획 2017-2021: 합의 및 전망. **신정부의 대북지원 정책방향 모색 및 대북지원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서울: 국회 이인영의원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7-46.
- 나눔인터내셔널. (2007). **북한보건의료체계개선사업 결과보고서: 2006 보건의료분야 민관협동사업**. 서울: 나눔인터내셔널.
- 도경옥. (2017. 1.). 유엔 총회의 2016 북한인권결의 채택. **정세와 정책 (250)**, 9-11. <http://www.sejong.org/board/1/egoread.php?bd=2&itm=&txt=&pg=6&seq=3585>에서 2019. 6. 1.인출.
- 모춘홍, 정병화. (2019). 북한과의 공생, 그 (불)가능성: 식량문제와 보건의료 실태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9(1), 133-162. DOI: 10.35281/cms.2019.06.09.01.133

- 모춘홍, 최진우. (2018). 규범세력(normative power)으로서의 유럽연합(EU)의 對 북한 인권정책. **통일연구**, 22(1), 143-173.
- 문경연. (2018). 유엔 북한협력 전략의 의미 및 SDGs에 초점을 맞춘 남북 개발 협력이 한반도 평화에 주는 함의. **SDGs와 한반도 평화**(pp. 9-39).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s://www.unesco.or.kr/assets/data/report/iqn7PJd2HUioDtVDGTz7aVlBgIN5u\\_1545633687\\_2.pdf](https://www.unesco.or.kr/assets/data/report/iqn7PJd2HUioDtVDGTz7aVlBgIN5u_1545633687_2.pdf)에서 2019. 6. 1. 인출.
- 서보혁. (2014).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개정판). 서울: 한올아카데미.
- 이무성, 박민중. (2016).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책 안보문제화, 규범, 그리고 외재화. **유럽연구** 34(3), 303-329.
- 이상현. (2015. 10. 18.). 북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재추진에 반발...‘초강경 대응’.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51018007700014?input=1195m>에서 2019. 6. 1. 인출.
- 이성훈.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기반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4), 3-38.
- 이주영, 이성훈, 임유경, 전지은, 정은주. (2014).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현황 및 인권적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창언, 오유석(2017). Post-2015 체제와 지속가능발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 차원의 역할과 과제. **동향과 전망**(101), 167-196.
- 정구연. (2017a). **유엔의 대북지원 현황과 평가. 북한 개발협력의 이해: 이론과 실제**(pp. 125-149). 서울: 오름.
- 정구연. (2017b). **북한인권과 개발협력. 북한 개발협력의 이해: 이론과 실제**(pp. 331-367). 서울: 오름.
- 조성은, 송철중, 모춘홍, 최소영, 민기채, 고혜진, . . . 김예슬. (2018).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조와 발전 방안: 사회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연구보고서[수시] 2018-02).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성은, 이수형, 김대중, 송철중, 황나미, 이요한, . . . 김예슬. (2018).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성은. (2019). 북한 보건의 분야의 변화와 전망(보건복지 ISSUE&FOCUS, 제 361호).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통해 본 사회주의 보건. (2018. 1. 28). 노동신문.
- 파리선언. (n.d.). 국제개발협력용어집,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80694&cid=44547&categoryId=44547>에서 언제 인출.
- 홍제환, 김석진, 정은미. (2018).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KINU 연구총서 18-12)**. 서울: 통일연구원.
- 환경부. (2018).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http://ncsd.go.kr/api/unsdgs%EA%B5%AD%EB%AC%B8%EB%B3%B8.pdf>에서 2019년 4. 1. 인출.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8). **2018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http://ncsd.go.kr/api/2018%20%EA%B5%AD%EA%B0%80%20%EC%A7%80%EC%86%8D%EA%B0%80%EB%8A%A5%EC%84%B1%20%EB%B3%B4%EA%B3%A0%EC%84%9C.pdf>에서 2019. 3. 1. 인출.
- 황나미. (2012. 3.). 북한주민의 공공 식량배급 수혜상황과 영양취약 아동규모추계. **보건복지포럼(185)**, 60-70.
- 노동신문(2005~2018)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UNICEF). (201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oport. Pyongyang: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 Golay, C. (2018). No One Will be Left Behind: The Role of 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s in Monitor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at Seek to Realiz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Academy Briefing No. 11). Geneva: The Geneva Acade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Human Right Council. (2017.2.22.).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34/66).

Meera Shekar, Jakub Kakietek, Julia Dayton Eberwein, and Dylan Walters. (2017). An Investment Framework for Nutrition: Reaching the Global Targets for Stunting, Anemia, Breastfeeding, and Wasting. Washington, D.C.: World Bank.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05).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OECD Publishing. (doi:10.1787/9789264098084-e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7). DAC-Action Oriented Policy Paper o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report No. DCD/DAC[2007]15). [https://www.oecd.org/dac/accountable-effective-institutions/Action-oriented\\_Policy\\_Paper\\_on\\_HR\\_and\\_Development.pdf](https://www.oecd.org/dac/accountable-effective-institutions/Action-oriented_Policy_Paper_on_HR_and_Development.pdf)에서 2019. 6. 1. 인출.

Smith, H. (2017). **장마당과 선군정치: '미지의 나라 북한'이라는 신화에 도전한다**(김재오 역). 파주: 창비. (원저 2015 출판)

United Nations. (2003). The UN Statement of Common Understanding on Human Rights-Based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rogramming.

United Nations. (2013).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New York: United Nation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dex.php?page=view&type=400&nr=893&menu=35>에서 2019. 6. 1. 인출.

United Nations. (201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New York: United Nations. 에서 2019. 6. 1.인출.
- United Nations, Country Team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6).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7-2009.
- United Nations, Country Team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0).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1-2015. [https://dprkorea.un.org/sites/default/files/2019-07/DPRK%20UNSF%202011-2015\\_print\\_version.pdf](https://dprkorea.un.org/sites/default/files/2019-07/DPRK%20UNSF%202011-2015_print_version.pdf)에서 2019. 6. 1. 인출.
- United Nations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PRK). (2016). Country Team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역,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을 향하여: U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 <http://ksm.or.kr/?pageid=2&charity-project=download&mod=document&uid=1084>에서 2019. 4. 1.인출.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00).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5/2: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UN Doc. A/RES/55/2). <https://undocs.org/A/RES/55/2>에서 2019. 6. 1. 인출.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01). Road map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UN Doc. A/56/326). pp. 55-58. <https://undocs.org/A/56/326>에서 2019. 6. 1. 인출.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3). A life of dignity for all: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adv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 beyond 2015;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UN Doc. A/68/202). <https://undocs.org/A/68/202>에서 2019. 6. 1. 인출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uman Rights Council. (2017a).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UN Doc. A/HRC/34/66). <https://undocs.org/A/HRC/34/66>에서 2019. 6. 1. 인출.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7b). Resolution 71/202: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UN Doc. A/RES/71/202). <https://undocs.org/en/A/RES/71/202>에서 2019. 6. 1. 인출.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uman Rights Council. (2019). 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UN Doc. A/HRC/WG.6/33/L.8). [https://www.upr-info.org/sites/default/files/document/corea\\_republica\\_popular\\_democratica\\_de/sesion\\_33\\_-\\_mayo\\_2019/a\\_hrc\\_wg.6\\_33\\_l.8.pdf](https://www.upr-info.org/sites/default/files/document/corea_republica_popular_democratica_de/sesion_33_-_mayo_2019/a_hrc_wg.6_33_l.8.pdf)에서 2019. 6. 1. 인출.
-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6).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https://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Qen.pdf>에서 2019. 6. 1. 인출.
-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2019).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indicators-list/>에서 2019. 6. 1. 인출.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0). WHO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9-2013.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161137/B4501.pdf?sequence=1&isAllowed=y>에서 2019. 6. 1. 인출.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6). WHO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4-2019.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250298/9789290224716-eng.pdf?sequence=1&isAllowed=y>에서 2019. 6. 1. 인출.



<부록 목차>

1. SDGs를 위한 국제 지표 체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의 세부 목표 .....	100
2. 한국의 지속가능목표 평가지표	
1) 사회 분야 .....	129
2) 환경 분야 .....	132
3) 경제 분야 .....	135

## 1. SDGs를 위한 국제 지표 체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의 세부 목표

(부표 1) SDGs를 위한 국제 지표 체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의 세부 목표

목표	세부 목표	지표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1 현재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측정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곳에서 극빈(極貧)을 2030년까지 근절	1.1.1 성별, 연령별, 고용 상태 및 도시·농촌 등 지역별로 세분화된 세계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 비율
	1.2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비율을 2030년까지 최소 절반으로 감축	1.2.1 성별 및 연령별로 세분화된 국별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 비율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하여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 체계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 달성	1.2.2 국별로 정의된 모든 측면에서 빈곤 상태의 전 연령 대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기본 공공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제, 유산(遺産),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 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1.3.1 성별 및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신생아, 산재 피해자, 빈곤계층과 취약계층별로 세분화되는 사회보호 안전망·시스템에 의해 보장되는 인구 비율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기후 관련 극심한 사태 및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축	1.4.1 기초서비스 접근성이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1.4.2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통해 안정된 토지권을 가졌거나,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여기는 성인 인구 비율(성별, 토지권 종류별)
		1.5.1 10만 명당 재난 영향으로 인한 사망 및 실종 인구수
		1.5.2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목표	세부 목표	지표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진흥		1.5.3 재난 위험 감축을 위한 2015~2030 센다이 프레임워크와 궤를 같이하는 지역 재난 위험 감축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5.4 국가 재난 위험 감소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지역 재난 위험 감소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	
	1.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모든 측면에서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	1.a.1. 빈곤 경감 프로그램에 정부가 직접 할당하는 국가 자원의 비율	
	1.b 빈곤 퇴치 행동에 대한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 인지적인 개발 전략에 기초하여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 긴전한 정책 체계 창출	1.a.2 핵심 서비스(교육, 보건, 사회보호)에 대한 정부 지출 비중	
		1.a.3 빈곤 경감 프로그램에서 직접적으로 할당된 보조금과 채무를 생성하지 않는 자금 수입의 합(GDP 대비)	
		1.b.1 여성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혜택을 돌리는 섹터에 배정된 정부의 운영 및 자본 지출 비중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하고,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 및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인증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하도록 보장	2.1.1 영양부족 현황
			2.1.2 식량불안경험최도(FIES) 기준 보통 또는 그 이하의 식량 불안 인구 현황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종식하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응	2.2.1 5세 이하 유아의 발달 저해 현황(연령별 신장: WHO 아동 성장 기준 중간값으로부터 표준편차 -2 미만)
			2.2.2 5세 이하 유아의 총류별(소고성, 과채중) 현황(신장 별 체중: WHO 아동 성장 기준 중간값으로부터 표준편차 -2 미만 또는 +2 초과)

목표	세부 목표	지표
	<p>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 자원과 투입 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 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 등을 통하여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기층농, 무축민 및 어민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 증대</p> <p>2.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 현상,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해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 이행</p> <p>2.5 2020년까지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변화된 종자 및 식물 은행 등을 통하여 종자, 재배식물, 가축과 사육동물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식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대한 접근 진흥</p> <p>2.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서 농업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 협력 강화 등으로 농촌 지역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와 지도사업, 기술 개발과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에 대한 투자 증대</p>	<p>2.3.1 농업·낙농업·산림업 규모에 따른 계층별 노동 생산량</p> <p>2.3.2 성별 및 원주민 지위별 소규모 식량생산자들의 평균소득</p> <p>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하의 농업 지역 비율</p> <p>2.5.1 증기 또는 장기 보호시설로 보전된 식량과 농업을 위한 동식물 유전자원의 수</p> <p>2.5.2 멸종 위험 여부에 따라 분류된 지역 품종</p> <p>2.a.1 농업지향지수(정부 지출 중 농업 비중)</p> <p>2.a.2 농업 섹터에 지원된 전체 공적자금(ODA 및 기타 공적자금)</p>

목표	세부 목표	지표
<p>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p>	<p>2.b 도하개발라우드의 지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 수출 보조금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모든 수출 조치의 병행 제거 등을 통하여 세계 농산물시장 내 무역 제한 및 왜곡을 교정하고 예방</p>	<p>2.b.1 농업수출보조금</p>
	<p>2.c 식료품 시장과 동 시장 파생상품의 적절한 기능을 확보하고, 극심한 식량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식량 비축분 등에 관한 시장 정보에 대한 적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채택</p>	<p>2.c.1 식량 가격 이상 지표</p>
	<p>3.1 2030년까지 전 세계적 인 산모 사망 비율을 10만 건의 생존출산당 70건 미만으로 감축</p>	<p>3.1.1 모성 사망비 3.1.2 전문인력에 의한 출산비율</p>
	<p>3.2 2030년까지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하고, 모든 국가는 신생아 사망을 1000건의 생존출산당 적어도 12건, 5세 미만 사망을 1000건의 생존출산당 적어도 25건으로 감축하는 것을 지향</p>	<p>3.2.1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3.2.2 신생아 사망률</p>
	<p>3.3 2030년까지 전염병인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열대풍토성 소외질환을 종식하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p>	<p>3.3.1 성별, 연령별, 주요 인구군별 감염되지 않은 인구 1000명당 HIV/AIDS 신규 발생률 3.3.2 인구 100,000명당 결핵 발생률 3.3.3 인구 1,000명당 말라리아 발생률 3.3.4 인구 100,000명당 B형 간염 발생률 3.3.5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p>
	<p>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 감축하고 정신 건강 및 복리 증진</p>	<p>3.4.1 심혈관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질환 사망 비율 3.4.2 자살사망률</p>

목표	세부 목표	지표
	3.5 마약 남용과 알코올의 해로운 이용을 포함한 약물 남용의 예방과 치료 강화	3.5.1 물질 남용 장애 치료(약물, 신경, 재활, 사후 서비스 등) 범위 3.5.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알코올 섭취량(국별로 정의된 기준에 따라)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전 세계적 인 사망과 상해 건수 반감(半減)	3.6.1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목적을 포함한 성·생식 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생식 보건의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 통합 보장	3.7.1 현대적인 피임법을 충족하는 기임기 여성(15~49세)의 비율 3.7.2 연령층별 1000명 여성당 청소년 출산율(10~14세, 15~19세)
	3.8 모두를 위한 재문 위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양질의 저렴한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	3.8.1 (재생산, 모성, 신생아, 아동보건, 감염병, 비전염성 질병, 보건서비스 역량 및 접근성을 포함한 추적 개입에 기반한 필수 서비스의 평균 보급률로 정의되는) 필수 보건서비스의 보급률 3.8.2 총 가계지출 혹은 수입 중에서 보건(건강) 분야에 많은 가계지출을 하는 인구의 비율
	3.9 2030년까지 위해 화학물질과 대기·물·토양 공해 및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건수를 상당히 감축	3.9.1 기구 및 주변의 공기 오염에 기인한 사망률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위생시설 및 위생행동 부재(안전하지 않은 WASH 서비스)에 기인한 사망률 3.9.3 비의도적 중독(Unintentional poisoning)에 기인한 사망률
3.a	적절한 경우 모든 국가에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 기본협약(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행 강화	3.a.1 15세 이상 인구 중 흡연자의 연령 표준화 현황

목표	세부 목표	지표
<p>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p>	<p>3.b 주로 개도국에 영향을 끼치는 진염성 및 비진염성 질병을 위한 백신과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유연성에 관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상의 조항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개도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에 따라 저렴한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 제공,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 제공</p>	<p>3.b.1 국가 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의 비율</p>
		<p>3.b.2 의학 연구 및 기초보건 분야에 대한 ODA 총액[1]</p>
		<p>3.b.3 지속가능한 기반에서 (국민들이) 이용 가능하고 지불 가능한 관련 필수 의약품들을 갖춘 보건시설의 비율</p>
	<p>3.c 보건재원 및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 개도국 내 보건 인력의 고용, 개발, 훈련 및 모두를 상당히 증대</p>	<p>3.c.1 보건 인력 비율과 배치</p>
	<p>3.d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국가적·세계적 보건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 위험 감축 및 관리 역량 강화</p>	<p>3.d.1 국제보건규칙(IHR) 역량 및 보건 긴급 대비</p>
	<p>4.1 2030년까지 모든 소녀와 소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결과를 이끌어 내고, 무상이고 공평한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이수하도록 보장</p>	<p>4.1.1 (a) 학년 3분의 2 이수 시점, (b) 초등 졸업, (c) 고등교육 저학년 이수 시점에 읽기에 능숙하여 최소 숙달 기준을 달성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중(성별)</p>
		<p>4.2.1 보건, 학습, 심리적 건강(well-being) 발달 정도가 정상적인 5세 미만 아동의 비중(성별)</p>
	<p>4.2 2030년까지 초등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모든 소녀와 소년이 양질의 조기 아동 개발,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p>	<p>4.2.2 (공식 초등 교육 시작 1년 전에) 체계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p>

목표	세부 목표	지표
4.3	2030년까지 대학을 포함하여 저렴·양질의 기술·직업·고등 교육에 대한 모든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접근 보장	4.3.1 지난 12개월 동안 정규·비정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성별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4.4	2030년까지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을 위한 기능적·직업적 기술을 포함하여 적절한 기술을 보유한 청년과 성인의 수 상당히 증대	4.4.1 ICT를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중(기술별)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근절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4.5.1 페리티지수(성별, 도농, 소득수준 및 장애, 원주민, 분쟁 영향 등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정도에 따라)
4.6	2030년까지 모든 청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력과 수리력 획득하는 것 보장	4.6.1 특정 연령별로 기능적 (a) 문해, (b) 수리 능력 숙련도가 적어도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인구 및 성별 비율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과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 개발 기여에 대한 공감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 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도록 보장	4.7.1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i) 세계시민의식 교육과 (ii) 지속가능개발 교육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과과정, (c) 교사 교육, (d) 학생 평가의 모든 차원에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4.a	아동·장애·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	4.a.1 (a) 전기, (b) 수업 목적의 인터넷, (c) 수업 목적의 컴퓨터, (d) 장애 학생을 위한 설비 및 교재, (e) 기초 식수, (f) 성별로 분리되어 있는 기초위생시설, (g) 기초손씻기시설(WASH 지표 정의에 따른)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학교의 비율
4.b	선진국 및 기타 개도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교육	4.b.1 학습 분야 및 형태에 따른 장학금 ODA 규모

목표	세부 목표	지표
목표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리 신장	에 등록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및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증대	4.c.1 국별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 수준의 체계적인 자격 이전 교육 및 재교육을 받은 (a) 유치원, (b) 초등학교, (c) 중등학교, (d) 고등학교 교사의 비율
	4.c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 개도국에서의 교사 연수를 위한 국제 협력 등을 통하여 자격 있는 교사의 공급 상당히 증대	5.1.1 양성평등과 빈차별을 증진하고 강제하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 여부
	5.1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2.1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배우자 및 데이트 상대 포함)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 중 현재 또는 이전의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 경험자 비중(연령별, 폭력 형태별)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5.2.2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서 성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의 비중(연령별, 장소별)
	5.3 아동 결혼, 조혼 및 강제 결혼과 여성 할례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 근절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여성의 비중 5.3.2 15~49세 소녀 및 여성 중 여성 성기 절제(할례) 받은 연령별 비중
5.4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적 보호 정책을 제정하고 국가별로 적절하게 가구와 가족 내에서 의 책임 분담을 증진함으로써 무상 돌봄과 기사노동을 인정하고 가치 있게 인식	5.4.1 성별, 연령별, 장소별 부모부의 집안일 및 양육에 할애하는 시간 비중	
5.5 정치·경제·공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5.5.1 의회와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목표	세부 목표	지표
<p>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p>	<p>여성들이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기회 평등하게 보장</p>	<p>5.5.2 여성 경영진 비중</p>
	<p>5.6 국제연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과 베이징 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 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생식 보건과 생식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p>	<p>5.6.1 재생산 권리, 피임도구 사용, 성관계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15~49세 여성 비율</p> <p>5.6.2 성직, 재생산적 보건, 정보, 교육에 대한 15~49세 여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법률 및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 수</p>
	<p>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해 평등한 권리,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제, 금융서비스, 유산(遺産)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 단행</p>	<p>5.a.1 (a) 성별 농지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을 보장받는 전체 농업 인구 비중, (b) 총 토지 소유자 중 여성 토지 소유자(토지권 종류별)</p>
	<p>5.b 여성 권의 신장 증진을 위하여 핵심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강화</p>	<p>5.a.2 (관습법을 포함한) 법적 근거를 통해 여성의 토지 소유 또는 통제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수</p>
	<p>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의 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건전한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률 채택하고 강화</p>	<p>5.b.1 성별 휴대폰 보유 개인 비중</p> <p>5.c.1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자원 배분 및 추적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중</p>
	<p>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대해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달성</p>	<p>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p>
	<p>6.2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의 요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해 적절하고 공평한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에 대한 접근을 달성하고 노상 배변 종식</p>	<p>6.2.1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시설 등을 포함해 안전한 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p>

목표	세부 목표	지표
<p>목표 7. 모두를 위해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p>	<p>6.3 2030년까지 오염 감축, 유해 화학물질 및 물질의 투기 근절과 방출 최소화, 미처리 폐수 비용 반감(半減), 전 세계적인 재활용과 안전한 재사용의 상당한 증진을 통하여 수질 개선</p>	<p>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하수 비율</p>
	<p>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 걸쳐 물 사용의 효율성을 상당히 증대하고,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담수의 지속가능한 취수와 공급을 보장하며,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수를 상당히 감축</p>	<p>6.3.2 양호한 주변 수질을 갖춘 수계 비율</p>
	<p>6.5 2030년까지 적절한 경우 초국경 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수준에서 통합된 수자원 관리 이행</p>	<p>6.4.1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 사용 효율 변화</p>
	<p>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암반 및 호수를 포함한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p>	<p>6.4.2 물 스트레스 수준: 가용한 담수 자원 비율로서의 담수 취수</p>
	<p>6.a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물 효율성,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한 물 및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서 국제적 협력, 개도국에 대한 역량 구축 지원 확대</p>	<p>6.5.1 통합 물 관리(IWRM) 이행 정도(0~100)</p>
	<p>6.b 물 및 위생 관리 개선에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p>	<p>6.5.2 물 협력을 위한 운영 체계를 가진 초국적 구역 비율</p>
	<p>7.1 2030년까지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p>	<p>6.6.1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3]</p>
	<p>7.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당히 증대</p>	<p>6.a.1 정부 지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시설 관련 ODA 총액</p>
	<p>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을 두 배 증대</p>	<p>6.b.1 물과 위생시설 관리에 관한 운영 정책과 지역사회 참여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지방행정 조직의 비율</p>
		<p>7.1.1 전기 접근성을 가진 인구 비율</p>
		<p>7.1.2 청정연료와 기술들을 주로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p>
		<p>7.2.1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p>
		<p>7.3.1 일차에너지와 GDP 차원에서 측정된 에너지 집중도</p>

목표	세부 목표	지표
목표 8.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너지의 효율성, 진보되고 보다 청정한 화석연료 기술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 시설과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증진	7.a.1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및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국제 재정 유입
	7.b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 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서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모두를 위한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기술 개선	7.b.1 GDP의 비율로 측정되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 및 지속가능개발 서비스 인프라와 기술을 위한 금융 거래 해외 직접투자 규모
	8.1 국가별 상황에 따라 1인당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특히 최빈개도국에서는 최소 연 7%의 국내총생산 성장 지속	8.1.1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8.2 고부가가치 부문 및 노동집약적 부문에 초점을 두는 등 다변화, 기술 개선 및 혁신을 통하여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 달성	8.2.1 취업인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 지향적 정책을 진흥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을 통하여 미소(微小)기업 및 중소기업의 공식화와 성장 장려	8.3.1 성별 비농업 분야 비공식 고용 비율
	8.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에 따라 선진국들이 주도하여 소비와 생산에서 전세계적인 자원 효율성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환경 악화로부터 분리하도록 노력	8.4.1 물질발자국(MF), GDP 대비 및 1인당 MF  8.4.2 국내물질소비(DMC), GDP 대비 및 1인당 DMC

목표	세부 목표	지표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해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 달성	8.5.1 직업별, 성별, 장애 여부에 따른 시간당 소득 8.5.2 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 실업률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가 아닌 청년 비율을 상당히 감축	8.6.1 15~24세 청(소)년 중 교육 또는 고용,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NEET) 인구 비율
	8.7 강제노동, 퇴직, 현대적 노예제도와 인신매매 종식, 소년병 징집, 이용을 포함한 최악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근절을 확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 종식	8.7.1 성별, 연령별 아동노동 아동의 수 및 비율
	8.8 이주근로자, 특히 여성 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증진	8.8.1 성별, 이민 신분별 치명 또는 비치명적 직업 관련 부상 빈도 비율 8.8.2 성별, 이민 신분별 ILO 협약과 국내 임법에 기반하여(단체교섭과 교섭단체 구성의 자유 등) 노동권의 국내적 보장 증대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상품을 홍보하는 지속가능 관광 진흥 정책을 고안하고 이행	8.9.1 전체 GDP에 대한 비율로 측정된 관광의 GDP 기여도 및 성장률 8.9.2 성별 전체 일자리에서 관광산업 일자리 비중으로서 일자리의 수와 일자리 증가율
	8.10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8.10.1 성인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과 ATM 수 8.10.2 15세 이상 성인 중 은행, 기타 금융기관 또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인구 비율

목표	세부 목표	지표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8.a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해 강화된 통합 체계(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등을 통하여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지원 증대	8.a.1 무역을 위한 원조(AfT) 약정 및 배분
	8.b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진 세계적인 전략을 개발·운용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고용 협약(Global Jobs Pact) 이행	8.b.1 주요 전략 혹은 국가 고용 전략의 부분으로서 청년 고용을 위해 발전된 혹은 조직화된 국가 전략의 존재 여부 8.b.2 주요 전략 혹은 국가 고용 전략의 부분으로서 청년 고용을 위해 발전된 혹은 조직화된 국가 전략의 존재 여부
	9.1 모두를 위한 저렴한 고품질 공공을 두고 경제개발과 인간의 복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적·초국경적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양질의 인프라성 있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개발	9.1.1 사계절도로(all season road)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는 농촌인구 비율 9.1.2 교통수단별 승객 및 운송량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증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별 상황에 따라 고용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율을 상당히 증대하며, 최빈개도국에서는 이 비율을 두 배 증대	9.2.1 GDP와 1인당 GDP상 제조부가가치(MVA) 비율 9.2.2 전체 고용에서 제조업 고용 비중
	9.3 특히 개도국에서 소규모 산업체 및 기타 기업의 저렴한 산업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이들의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 증진	9.3.1 전체 산업 부가가치 중 중소기업의 비중 9.3.2 용자가 있거나 여신 한도를 보유한 중소기업 비율
	9.4 2030년까지 자원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청정하고 환경적으로 진전된 기술 및 산업 과정을 더 많이 채택하며, 모든 국가가 각국의 능력에 따라 행동을 취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산업을 개편함으로써 지속가능성 부여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	세부 목표	지표
목표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 등 완화	9.5 과학적 조사를 강화하고, 2030년까지 혁신 장려 및 100만 명당 연구·개발 종사자 수와 공공·민간 연구·개발 지출의 상당한 증대를 통하여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을 개선	9.5.1 GDP 중 R&D 지출  9.5.2 지주자 100만 명당(전일제) 연구인력
	9.a 아프리카 국가, 최빈개도국,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도국에 대한 금융적·기술적·기능적 지원 강화를 통하여 개도국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촉진	9.a.1 인프라에 활용된 전체 국제공적지원(ODA 및 기타 공공자금)
	9.b 특히 산업 다변화와 상품에 대한 가치 부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 환경의 보장 등을 통하여 개도국에서의 국내 기술 개발, 연구 및 혁신을 지원	9.b.1 전체 부가가치 중 중상위 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9.c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상당히 증대하고,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에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이고 저렴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9.c.1 기술별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 인구 비율
	10.1 2030년까지 하위 40% 인구의 소득 성장을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	10.1.1 전체 인구 또는 하위 40%의 가구 지출 또는 1인당 소득의 증대를
	10.2 2030년까지 나이, 성,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을 강화·증진	10.2.1 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 중간소득의 50% 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의 비율
	10.3 차별적 법, 정책 및 관행의 근절, 이와 관련한 적절한 입법, 정책 및 행동의 진흥 등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	10.3.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차별받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reporting) 인구의 비율
	10.4 특히 재정·임금·사회보호 정책 등의 정책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평등 확대를 달성	10.4.1 GDP 중 임금과 사회보장 이전으로 구성된 노동비용

목표	세부 목표	지표
	<p>10.5 글로벌 금융 시장 및 기관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이와 같은 규제의 이행 강화</p> <p>10.6 더욱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 있고 합법적인 기관이 되도록 글로벌 국제경제·금융 기구에서의 의사결정에서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 보장</p> <p>10.7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의 이행 등을 통하여 질서 있고 안전하며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사람의 이주와 이동성 촉진</p> <p>10.a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차등 대우 원칙 이행</p> <p>10.b 국가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수요가 가장 큰 국가, 특히 최빈개도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와 자금 거래 장려</p> <p>10.c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의 거래 비용을 3% 미만으로 줄이고, 송금 비용이 5%를 초과하는 송금 경로 철폐</p>	<p>10.5.1 금융진전성지수</p> <p>10.6.1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회원 및 의결권 비율</p> <p>10.7.1 이민국에서의 연소득 중 피고용인이 부담하는 고용 비용</p> <p>10.7.2 잘 관리되는 이주정책을 이행해 온 국가의 수</p> <p>10.a.1 최빈개도국 무관세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진 비율</p> <p>10.b.1 ODA, FDI 및 기타 자금 등 자금의 종류, 수원국별, 공여국별 개발을 위한 전체 자원 동원 [(ODA)/2(FDI)]</p> <p>10.c.1 송금 총액에서 송금 비용의 비율[3]</p>
<p>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p>	<p>11.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를 개선</p> <p>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하여 도로 안전을 개선하여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지속가능한 교통 체계에 대한 접근 제공</p>	<p>11.1.1 빈민가, 무허가 또는 적절하지 않은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도시인구 비율</p> <p>11.2.1 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p>

목표	세부 목표	지표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 참여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 계획·관리 역량 강화	11.3.1 인구성장률 대비 토지소모비율 11.3.2 정기적이고, 인구구성비에 맞추어 운영되는 도시 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구조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시의 비율(%)	11.3.1 인구성장률 대비 토지소모비율 11.3.2 정기적이고, 인구구성비에 맞추어 운영되는 도시 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구조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시의 비율(%)
11.4 세계 문화·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 강화	11.4.1 유산의 종류(문화, 자연, 복합, 세계유산센터 등), 정부 수준(중앙, 지역, 시군), 지출 종류(운영비·투자), 민간 자금 종류(기부, 민간 비영리, 스폰서) 등에 따라 분류된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보호에 지출되는 1인당 총(공공 및 민간) 지출액	11.4.1 유산의 종류(문화, 자연, 복합, 세계유산센터 등), 정부 수준(중앙, 지역, 시군), 지출 종류(운영비·투자), 민간 자금 종류(기부, 민간 비영리, 스폰서) 등에 따라 분류된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보호에 지출되는 1인당 총(공공 및 민간) 지출액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사망자 수 및 피해자 수를 상당히 감축하며,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하여 재난에 의해 발생하는 국내총생산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상당히 감축	1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의 영향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수 11.5.2 주요 인프라에 대한 재난 피해 및 기초서비스 붕괴를 포함하여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	1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의 영향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수 11.5.2 주요 인프라에 대한 재난 피해 및 기초서비스 붕괴를 포함하여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
11.6 2030년까지 대기의 질과 도시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한 주의 등을 통하여 도시의 부정적인 1인당 환경 영향 감축	11.6.1 도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폐기물 중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합하게 최종 처리되는 도시 고체 폐기물의 비율 11.6.2 도시 내(인구 기준치 적용) PM2.5 및 PM10 등으로 표기되는 연중 미세먼지 평균 수준	11.6.1 도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폐기물 중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합하게 최종 처리되는 도시 고체 폐기물의 비율 11.6.2 도시 내(인구 기준치 적용) PM2.5 및 PM10 등으로 표기되는 연중 미세먼지 평균 수준
11.7 2030년까지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공공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 제공	11.7.1 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 도시 내 대중에 개방되어 있는 공용 공간의 평균 비중 11.7.2 성별, 연령별, 장애의 정도 및 발생 장소별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추행의 피해자 비율	11.7.1 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 도시 내 대중에 개방되어 있는 공용 공간의 평균 비중 11.7.2 성별, 연령별, 장애의 정도 및 발생 장소별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추행의 피해자 비율

목표	세부 목표	지표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11.a 국가·지역·지역적 개발계획을 강화함으로써 도시, 도시 근교 및 농촌 지역 간 긍정적인 경제적·사회적 환경적 연결 지원	11.a.1 인구 증가 예측과 소요 자원을 통합하여 수립된 도시 및 지역 개발계획을 이행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도시 규모별)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재난 회복력을 위한 통합된 정책·계획을 채택·이행하는 도시와 거주지의 수를 상당히 증대하고, 2015~2030 센다이 재난 위험 경감 체계(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전체적인 재난 위험 관리 개발·이행	11.b.1 재난 위험 감축을 위한 2015~2030 센다이 프레임워크와 계획을 같이하는 지역 재난 위험 감축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1.b.2 국가 재난 위험 감소 전략과 계획을 같이하는 지역 재난 위험 감소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
	11.c 금융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의 자재를 사용하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건물들을 지을 때 최빈개도국 지원	11.c.1 최빈국 내 현지 자재들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자원 효율적인 건축과 재건축에 지원되는 재정지원 규모
	12.1 개도국의 개발과 능력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가 행동을 취하고 선진국이 주도하면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 이행	12.1.1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SCP) 국가 이행계획 또는 국가 정책에 우선순위 및 목표로 SCP가 주류화되어 있는 국가의 수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 달성	12.2.1 물질발자국(MF), GDP 대비 및 1인당 MF  12.2.2 국내물질소비(DMC), GDP 대비 및 1인당 DMC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의 전 세계적인 1인당 식량 낭비를 반감(半減)하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하여 생산·공급 과정의 식량 손실 감축	12.3.1 (1)글로벌 식품손실지수 그리고 (2) 식품낭비지수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적 체계에 따라 화학물질과 모든 폐기물에 대해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달성하고, 인간의 건강과	12.4.1 유해 화학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국제 다자간 환경 협약 각국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다하는 당사국의 수

목표	세부 목표	지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 물, 토양에 대한 배출을 상당히 감축	12.4.2 인당 유해 폐기물, 유해 폐기물의 처리 비율 및 처리 방법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상당히 감축	12.5.1 국가 전체의 재활용 비율과 톤(ton)
	12.6 기업,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관행을 채택하고, 보고 주기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시키도록 장려	12.6.1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12.7 국가 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관행 진흥	12.7.1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정책과 실행계획들을 이행하는 국가의 수
	12.8 2030년까지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생활방식에 대해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	12.8.1 (i) 글로벌 시민교육과 (ii) 기후변화 교육을 포함한 지속가능 개발 교육이 국가 (a) 교육정책, (b) 교과과정, (c) 교사 교육, (d) 학생 평가에 주류화된 정도
	12.a 개도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지향하기 위한 과학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	12.a.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CP) 및 환경친화적 기술 관련 R&D 부문 개발도상국 지원 총액
	12.b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상품을 진흥하는 지속가능 관광에 미치는 지속가능 개발의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수단 개발·이행	12.b.1 모니터링과 평가 기제가 있는 지속가능 관광 전략 및 정책, 이행된 실행계획의 수
	12.c 개도국의 특정한 수요·여건을 온전히 고려하고, 빈곤층 및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도국 개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세계를 개혁하고 해로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여 이를 단계적	12.c.1 GDP 단위당(생산과 소비) 화석연료 보조금 액수 및 화석연료에 대한 총 국가 지출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목표	세부 목표	지표
<p>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행동의 실시</p>	<p>으로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p>	<p>13.1.1 인구 10만 명당 재난의 영향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수</p>
	<p>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 강화</p>	<p>13.1.2 재난 위험 감축을 위한 2015~2030 선다이 프레이미워크와 궤를 같이하는 지역 재난 위험 감축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p>
	<p>13.2 기후변화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p>	<p>13.1.3 국가 재난 위험 감소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지역 재난 위험 감소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p>
	<p>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축 및 조기경보에 관한 교육, 인식 제고 및 인적·제도적 역량 개선</p>	<p>13.2.1 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않도록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고 기후회복력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된 정책·전략·계획(국가적응계획, 국가적으로 결정된 기여금, 국민소통, 저널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보고서 등을 포함)을 수립하거나 운용하는 것에 관해 논의해 온 국가의 수</p>
	<p>13.a 의미 있는 완화 조치와 이행에 관한 투명성의 맥락에서 개도국 필요에 대응, 긴급적 조속한 출자를 통한 녹색기후기금의 온전한 운용을 위하여</p>	<p>13.3.1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경보 등을 초동, 중고 등, 상급 교육과정에 통합한 국가의 수</p>
	<p>13.a 의미 있는 완화 조치와 이행에 관한 투명성의 맥락에서 개도국 필요에 대응, 긴급적 조속한 출자를 통한 녹색기후기금의 온전한 운용을 위하여</p>	<p>13.3.2 완화, 적응, 기술이전, 개발 이행을 위한 제도, 시스템, 개인의 역량 강화를 논의해 온 국가의 수</p>

목표	세부 목표	지표
목표 14.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대 양, 바다,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2020년까지 모든 원천으로부터 매년 1000억 달 러를 공동 동원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유엔기후변 화협약 선진국 당사국의 공약 이행	
	13.b 여성, 청년 및 지역·소의 공동체에 초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국에 서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관리 역량 제 고를 위한 메커니즘 촉진	13.b.1 여성, 청소년, 지방,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관 심 하에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과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재정, 기술, 역량강화를 비롯한 특화된 지원을 받고 있 는 최빈국 및 중소도서 개발도상국의 수
	14.1 2025년까지 해양 쓰레기 및 영양염류 오염을 포 함하여 특히 육지 기반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상당히 감축	14.1.1 해안부영양화지수(CEP) 및 플라스틱 부유성 폐기 물 농도
	14.2 2020년까지 회복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연 안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보호하고, 건강 하고 생산적인 대양을 만들기 위하여 등 생태계 의 복구를 위한 행동 실시	14.2.1 생태계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관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비율
	14.3 모든 수준에서 과학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대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응	14.3.1 합의된 대표시로 채취 지점들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 산도(pH)
	14.4 최소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지 속가능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능 한 한 최단 기간에 어족 자원을 복원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효과적으로 어획을 규제하고,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및 파괴적인 어업 관행 을 종식시키며 과학에 기초한 관리계획 이행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 내의 어족 비율

목표	세부 목표	지표
	14.5 2020년까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에 기초하여 해안 및 해양 지역의 최소 10% 보존	14.5.1 해양보호구역 범위
	14.6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수산보조금 협상의 불가결한 일부가 되어야 함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 어획 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며, 이와 같은 보조금의 신규 도입 자체	14.6.1 국가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기제 이행 차원에서의 진척 수준
	14.7 2030년까지 수산업, 양식업 및 관광의 지속가능 관리 등을 통하여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군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경제 이익 증대	14.7.1 군소도서개발대상국, 최빈국 및 모든 국가에서 GDP 중 지속가능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
	14.a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개도국, 특히 군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개발에 대한 해양 생물 다양성 기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 기준과 지침(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Criteria and Guidelines on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을 고려하여 과학적 지식 증대, 연구 역량 개발 및 해양기술 이전	14.a.1 전체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 분야 연구에 배정되는 비율
	14.b 소규모 영세 어민을 위해 해양 자원·시장에 대한 접근 제공	14.b.1 국가별 소규모 영세 어업의 접근권(access rights)을 인지하고 보호하는 법·규제·정책·제도의 도입 차원에서의 진척 수준

목표	세부 목표	지표
	<p>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의 158항에서 환기된 대로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제공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반영된 바와 같은 국제법을 이행으로써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강화</p>	<p>14.c.1 해양과 그 자원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법·정책·제도 등을 통해 UNCLOS에 반영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해양 관련 장치들을 비준, 적용,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국가의 수</p>
	<p>15.1 2020년까지 국제협정하의 의무에 따라 육지·내륙·담수 생태계 및 그 서비스, 특히 산림·습지·산·긴조지의 보존,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p>	<p>15.1.1 총 육지 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 15.1.2 생태계 유형별 보호구역에서 보호되는 육상 및 담수 생태계 주요 장소(sites)의 비율</p>
	<p>15.2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해 지속가능한 관리의 이행을 진흥하고, 산림 전용을 중지시키며,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신규 조림과 재조림을 상당히 증대</p>	<p>15.2.1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진척도</p>
<p>목표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역전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p>	<p>15.3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가뭄·홍수의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해 황폐화된 토지와 토양을 복구하며, 토지 황폐화 증립 세계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p>	<p>15.3.1 전체 육지 중 황폐화된 토지의 비율</p>
	<p>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 개발에 필수적인 편이 제 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지 생태계 보존 보장</p>	<p>15.4.1 산중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범주 15.4.2 Mountain Green Cover Index</p>
	<p>15.5 자연 서식지의 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행동을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지시키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 보호 및 멸종 예방</p>	<p>15.5.1 Red List Index</p>

목표	세부 목표	지표
	15.6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하고 공평한 분배를 진흥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진흥	15.6.1 공평하고 공정한 혜택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한 국가의 수
	15.7 보호 동식물의 밀렵과 밀매를 종식시키기 위해 시급한 행동을 취하고, 불법 야생 동식물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대응	15.7.1 밀렵되거나 불법으로 포획되어 거래되는 야생 동물의 비율
	15.8 2020년까지 외래 침입종 유입 예방과 함께 이들이 육지·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우선순위를 통제하거나 퇴치	15.8.1 급속히 확산되는 외래종을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법을 도입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배분한 국가의 비율
	15.9 2020년까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지역적 계획, 개발 과정, 빈곤 감축 전략 및 회계에 통합	15.9.1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타깃2 (Aichi Biodiversity Target 2)에 따른 국내 목표 수립 진척 상황
	15.a 생물다양성·생태계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모든 원천으로부터 재원을 동원하고 상당히 증대	15.a.1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공공 지출 및 ODA
	15.b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모든 원천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 상당한 자원을 동원하고, 보존·재조림 목적을 포함하여 개도국들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15.b.1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공공 지출 및 ODA
	15.c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세계 기회 추구 역량 증대 등을 통하여 보호종의 밀렵·밀매 방지 노력에 대한 글로벌 지원 강화	15.c.1 밀렵되거나 불법으로 포획되어 거래되는 야생 동물의 비율

목표	세부 목표	지표
<p>목표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 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 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p>	<p>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히 감축</p>	<p>16.1.1 성별, 연령별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인구 10만 명당)</p> <p>16.1.2 성별, 연령별, 원인별 인구 10만 명당 분쟁 관련 사망자 수</p> <p>16.1.3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의 피해자 비율</p> <p>16.1.4 거주지 주변을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p>
	<p>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p>	<p>16.2.1 지난 1개월 동안 보육자로부터 신체적 처벌이나 정신적 공격을 경험한 바 있는 1~17세 아동·청소년의 비율</p> <p>16.2.2 성별, 연령별, 착취 유형별 인신매매 피해자의 수 (인구 10만 명당)</p> <p>16.2.3 18~29세 사이 남녀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 험한 인구 비율</p>
	<p>16.3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 범죄를 증진하고, 모두 에게 정의에 대해 평등한 접근 보장</p>	<p>16.3.1 관련 담국 또는 기타 공식적인 분쟁조정 메커니즘 에 지난 12개월 동안 피해 사례를 신고한 폭력 피 해자의 비율(변죄신고율)</p> <p>16.3.2 전체 수감 인구 중 판결 없이 구금되어 있는 사람 의 비율</p>
	<p>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무기 거래를 상당히 감축 하고, 도난자산 회수 및 반환을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 방지</p>	<p>16.4.1 불법자금의 유입과 유출의 총 가치(현재 미국 달러 가치 기준)</p> <p>16.4.2 국제 기준 및 법적 근거에 따라 보고 및 관리되고 있는 압류 소화기(small arms), 경화기(light weapons)</p>

목표	세부 목표	지표
16.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을 상당히 감축	16.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을 상당히 감축	16.5.1 지난 12개월 동안 적어도 1회 이상 공무원과 접촉한 적이 있으면서 뇌물을 주었거나 뇌물을 줄 것을 요구받은 인구의 비율
		16.5.2 지난 12개월 동안 적어도 1회 이상 공무원과 접촉한 적이 있으면서 뇌물을 주었거나 뇌물을 줄 것을 요구받은 민간 기업의 비율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투명한 제도 개발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투명한 제도 개발	16.6.1 섹터별(또는 예산코드별) 승인된 예산 중 1차 정부 지출의 비율
		16.6.2 가장 최근 이용했던 공공서비스에 만족한 인구 비율
16.7 모든 수준에서 호응하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	16.7 모든 수준에서 호응하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	16.7.1 국내 전체 대비 공공기관(중앙·지방의 입법부, 공공서비스, 사법부)에서의 (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 인구 집단별) 지위
		16.7.2 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 인구 집단별 의사결정 과정이 포용적이고 수용적(responsive)이라고 믿는 인구 비율
16.8 개도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16.8 개도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16.8.1 국제기구 내 개발도상국 회원국 및 투표권의 비율
		16.9.1 5세 이하 아동 중 출생신고된 비율
16.10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 보호	16.10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 보호	16.10.1 지난 12개월간 언론인, 언론 관계자, 노조 활동가, 인권운동가에 대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고문으로 확인된 사건의 수

목표	세부 목표	지표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16.10.2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위해 헌법상, 법적이거나 정책적인 보장 방식을 도입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6.a 특히 개도국에서 폭력 예방 및 테러리즘·범죄 방지 지를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역량 구축을 위하여 국제 협력 등을 통한 관련 국가기관 강화	16.a.1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상의 독립된 국가인권 기구의 존재 여부
	16.b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비차별적 법과 정책을 증 진하고 시행	16.b.1 국제인권법상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근거하여 지 난 12개월 동안 개인 차원에서 차별 또는 괴롭힘 을 당했다고 느꼈음을 신고한 인구 비율
	17.1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 선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자원 동원 강화	17.1.1 재원별 GDP 대비 총 정부 수익  17.1.2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내 예산 비율
	17.2 개도국에 대한 ODA/GNI 0.7%,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 0.15~0.20% 목표를 달성하겠 다는 많은 선진국의 공약을 포함하여 선진국들 은 자국의 공적개발원조 약속을 완전히 이행. ODA 공여국들이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GNI의 최소 0.20% 제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 증여 국가의 GNI 대비 최 빈국 및 전체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ODA/GNI
	17.3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추가 재원 동원	17.3.1 총 국내 예산 중 FDI와 ODA, 남남협력의 비율 17.3.2 전체 GDP 증 해외 송금 비율(미국 달러 기준)
	17.4 적절한 경우 채권 금융, 채무 탕감 및 채무 재조 정 축진을 위한 정책 조율을 통해 개도국의 장기 채무 건진성 확보를 지원하고, 채무 위기 완화를 위하여 고채무빈국의 외채 문제에 대응	17.4.1 채화와 서비스의 수출 중 부채서비스의 비율

목표	세부 목표	지표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 증진 체제를 채택하고 이행	17.5.1 최빈국에 대한 투자 촉진 환경을 도입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7.6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남북·남남·삼각 형태의 지역·국제 협력 및 접근을 강화하고, 특히 유엔 수준에서 현존 메커니즘 간 조율 개선 및 글로벌 기술 촉진 메커니즘 등을 통하여 상호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지식 공유를 강화	17.6.1 협력 형태별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합의 또는 프로그램의 수  17.6.2 속도별 100명당 인터넷 광대역 사용자
	17.7 상호 합의에 따라 양허·특혜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에 환경적으로 진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 증진	17.7.1 개발도상국의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 개발, 이전,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인된 자금의 총액
	17.8 2017년까지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 구축 메커니즘을 완전히 운용하고, 핵심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강화	17.8.1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
	17.9 남북·남남·삼각 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지원할 개도국들의 효과적·선별적인 역량 구축 이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 강화	17.9.1 개발도상국에 약정된 재정 및 기술 지원의 달러화 가치(남북, 남남, 삼각 협력을 통한 지원 포함)
	17.10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 세계무역기구의 보다 포괄적인 규칙에 기반하며, 개방적·비차별적이고 공평한 다자무역 체제 증진	17.10.1 전 세계 가장 관세 평균
	17.11 특히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두 배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의 수출을 상당히 증대	17.11.1 전 세계 수출 중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점유 비율

목표	세부 목표	지표
	17.12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 가능한 특별 원산지 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 접근 원활화에 대한 기여 보장 등을 통하여 세계 무역기구 결정에 일치하도록 모든 최빈개도국에 영구적인 무관세·무쿼터 시장 접근의 적시 이행 실현	17.12.1 개발도상국, 최빈국, 중소도서개발도상국들에 부과된 평균 관세
	17.13 정책 조율 및 정책 일관성 등을 통하여 글로벌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17.13.1 거시경제 대시보드
	17.14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17.14.1 지속가능개발의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있는 국가의 수
	17.15 빈곤 근절과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자율성과 리더십 존중	17.15.1 개발협력 주체가 제공한 기획 관련 도구 및 국가 보유 결과 프레임워크의 사용 정도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전문성·기술·재원을 동원·공유하고 다주체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6.1 SDGs 달성을 지원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개발 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과정을 보고하는 국가의 수
	17.17 파트너십들의 경험과 재원 조달 전략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공공·민관·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	17.17.1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에 약정한 미국 달러 총액
	17.18 소득,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이주 신분, 장애, 지리적 위치 및 국가적 맥락에서 적절한 기타 특징으로 세분화되는 고품질의 시의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을 상당히	17.18.1 국가통계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생산된 세부 목표에 따라 완전히 세분화된 지속 가능 개발 지표의 비율

목표	세부 목표	지표
	<p>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과 근 소도서개도국 등 개도국에 대한 역량 구축 지원 강화</p>	<p>17.18.2 국가통계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에 따른 국가통계 법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수</p> <p>17.18.3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행되고 있는 국가통계 계획이 있는 국가 수(재원별)</p> <p>17.19.1 개발도상국에서 통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의 달러 가치</p> <p>17.19.2 a) 지난 10년간 인구 및 가구센서를 적어도 1회 실시하고 b) 출생신고 100%, 사망신고 80%를 달성한 국가의 비율</p>
	<p>17.19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을 보완할 지속가능 개발에 관한 성과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현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 역량 구축 지원</p>	

자료: 김지현(2016), SDGs 지표 확정과 의의(개발과 이슈 제25호), pp. 19-39(서울: 한국국제협력단. [http://lib.koica.go.kr/bbs/content/4\\_3031?pn=4&](http://lib.koica.go.kr/bbs/content/4_3031?pn=4&)에서 2019. 5. 15. 인출)를 바탕으로 하되 변경된 내용은 UN Statistics Division(2019),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indicators-list/>에서 2019. 6. 1. 인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 2. 한국의 지속가능목표 평가지표

○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사회 분야’, ‘환경 분야’, ‘경제 분야’의 세 가지 영역에 속한 17개의 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는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실현 및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가능개발지표를 선정 및 평가하고 있다. 2006년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77개의 지표가 선정되었고, 2015년 제8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를 변경 및 추가, 삭제하여 현재는 84개의 지표를 평가하고 있다. 지표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 분야

〈부표 2〉 사회 분야 평가지표

분류	지표명 (단위)	지표 정의	산정 방법
빈곤	빈곤인구비율(%)	총인구수 대비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수 비율(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 인구수/총인구)*100
	소득불평등에 대한 지니계수(계수)	가구 간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과 1사이의 수치로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	지니계수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전체 가구 기준)
	사회복지지출(%)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 이때의 사회복지비는 공공사회복지 지출과 법정 민간 사회복지 지출을 포함한	(사회복지비/GDP)*100
	노동소득분배율(%)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피용자 보수/(피용자 보수+영업이익))*100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률(%)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중 취업자 비율	(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
	근로시간(시간/월)	소정실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더한 값	총 실근로시간 수/(전월 말 근로자 수+당월 말 근로자 수)/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대비 비정규직(한시직·시간제·비전형 포함) 근로자의 임금 비율	(비정규직 월평균 시간당 임금액/정규직 월평균 시간당 임금액)*100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8)(%)	정규직 근로자 수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수(한시직·시간제·비전형 포함) 비율	(비정규직 인구/정규직 인구)*100

8) 2016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보고하였으나 2018년의 경우 지표 정의에 따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보고함.

분류	지표명 (단위)	지표 정의	산정 방법
남녀 평등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여성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남성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10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만 15~64세 여성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비율	(여성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15~64세 여성 인구)*100
영양 상태	관리지 여성 비율(%)	전체 관리지 인원 중 여성 관리지 인원 비율	(여성 관리지 인원/전체 관리지 인원)*100
	유소년 영양 상태(%)	유소년(1~11세) 인구 중 영양섭취 부족자 및 에너지·지방 과잉 섭취자 비율	(영양소 섭취량/에너지 필요 추정량 혹은 영양소 평균 필요량)*100
사망 률	영아 사망률(%)	연간 출생아 1000명당 1세 미만 사망 영아 수가 차지하는 비율	(1세 미만 사망 영아 수/1년간 총 출생아 수)*1,000
	자살 사망률(%)	주민등록 연앙인구 십만 명당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주민등록 연앙인구)*100,000
수명	기대여명(세)	동시 출생한 집단이 연령별로 현재의 사망률을 경험한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	
식수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전체 농어촌 인구 중 상수도 보급 농어촌 인구 비율	(상수도 보급 농어촌 인구/전체 농어촌 인구)*100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공공재원/국민의료비)*100
건강 관리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 <sup>9)</sup>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자 수 중 국가 필수 예방접종 별 접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	(국가 필수 예방접종별 접종자/국가 필수 예방접종 조사 대상자 수)*100
	비만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인 인구 비율	(체질량지수(BMI) 25 이상 인구/만 19세 이상 인구)*100

9) 2015년부터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주민등록이 된 만 3세 이상) 시행.

분류	지표명 (단위)	지표 정의	산정 방법
교육 수준	고등학교 순졸업률(%)	3년 전 고등학교 입학자 수 대비 고등학교 졸업자 수의 비율	(고교 졸업자 수/각각 3년 전 입학자 수)*100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명)	전국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	전국 초등학교의 학생수/전국 초등학교의 학급수
생활 환경	(GDP 대비) 공공교육비 지출 (%)	GDP 대비 공공교육비 지출 비율	(총공교육비/GDP)*100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전체 가구 수 중 최소주거기준 면적, 방수 기준과 시설 기준 미달 기준 미달 가구 비율	(최소주거기준 면적, 방수 기준과 시설 기준 미달 가구수 /전체 가구수)*100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호/1000명)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주택수/전국 인구)*1000(호)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배)	가구 중위소득 대비 주택 중위가격 비율	주택 중위가격/가구 중위소득
범죄, 재해	범죄발생률(건/10만 명)	인구 10만 명당 연간 범죄 발생 건수	연간 범죄 발생 건수/10만 명
	자연재해 피해(명, 억 원)	자연재해 피해자 및 사망, 실종자(이재민 제외) 수와 당해 연도 가격 기준 피해액	
	사고(성) 사망만인율(‰)	근로자 수 대비 사고 사망자 수 비율(만인율)	(사고 사망자 수/근로자 수)*10,000
인구 변화	인구증가율(%)	전년 주민등록인구 대비 당해 연도 주민등록인구에서 전년 주민등록인구를 뺀 값의 비율	((금년 인구-전년 인구)/전년 인구)*100
	인구밀도(명/㎢)	국토 면적 대비 인구수	인구수/국토 면적
	고령인구 비율(%)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65세 이상 인구/총인구)*100

자료: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8). 2018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pp.21-116의 내용을 바탕으로 표 작성.

## 2) 환경 분야

〈부표 3〉 환경 분야 평가지표

분류	지표명 (단위)	지표 정의	산정 방법
기후 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 $MtCO_2$ )	교토의정서 상 6개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불화탄소, 육불화황)	교토의정서상 6개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인구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 $tCO_2eq/인$ )	국민 1인당 교토의정서상 6개 온실가스 배출량	
오존층	GDP 대비 온실가스 총배출량 ( $tCO_2eq/실질GDP(10억 원)$ )	GDP 대비 연간 온실가스 배출 총량	온실가스 총배출량( $tCO_2eq$ )/GDP
	오존층 파괴 물질소비량(톤)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배출 정도 (염화불화탄소, 할론, 사염화탄소, 111-트리클로로에탄)	
대기질	광역 도시권별 대기오염도(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대 도시의 연간 대기환경 기준치 초과 일수의 도시별 합계를 도시별 측정 지점 수로 나눈 수치	7대 광역 도시권 대기오염 물질의 환경 기준치 초과 일수/지역 대기측정망 측정 지점 수(도시별 산정 및 합계)
농업	농지 면적 비율(%)	국토 면적 중 농지 면적 비율	(전체 경지 면적/전체 국토 면적)*100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 비율(%)	유기, 무농약 등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량/농산물 총 생산량)*100
	식량자급률(%)	국민의 식량 소비량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곡물로 충족하는 비율(사료용 포함)	{국내 생산량/(국내 생산량+수입량)}*100

분류	지표명 (단위)	지표 정의	산정 방법
	화학비료 사용량(kg/ha)	경지 이용 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	당해 연도 비료 총 출하량 질소, 인산, 칼륨 성분량 기준/전체 경지 이용 면적
	농약 사용량(kg/ha)	경지 이용 면적당 농약 사용량	당해 연도 농약출하량/전체경지 이용 면적
산림	국토 면적 중 임야 지역 비율(%)	국토 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	(임야 면적/국토 면적)*100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인)	도시 지역 주민 1인당 도시공원의 면적	도시공원조성(집행) 면적/도시 인구
	목재 벌채 정도(%)	연간 임목 축적 증가량 대비 연간 목재 벌채량 비율	{연간 목재 벌채량(㎡)/연간 임목 축적 증가량(㎡)}*100
도시화	도시화율(%)	총인구에 대한 도시 거주 인구(행정구역 기준으로 읍 이상 도시 지역의 거주 인구 비율)	(도시지역(주거, 상업, 녹지 등) 인구/총인구)*100
	수도권 인구 집중도(%)	전국 인구에 대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 인구의 비율	(수도권 인구/전국 인구)*100
연안 지역	연안 오염도(mg/L)	연안 해양 생태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농도	
	보호 대상 해양생물종 수(종)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지정된 보호 대상 해양생물종 수	
	해양보호구역 면적(㎢)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어 특별히 보호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면적	해양생태계보호구역+연안습지보호지역
	갯벌 면적 증감(㎢)	전국 연안습지 중 갯벌 총면적의 증감	당해 연도 시·도별 갯벌 면적의 합 -비교 연도 시·도별 갯벌 면적의 합
어업	주요 지표종의 자원량 변화 (만 톤)	주요 지표종(고등어, 전갱이, 키조개, 참홍어, 도루묵)의 자원량을 측정하는 지표	

분류	지표명 (단위)	지표 정의	산정 방법
	면허권당 양식어업량(톤)	해면 양식 분야의 면허권당 총생산량	(해면 양식 분야 면허어업 총생산량/해면 양식 분야 총 면허 건수)*100
	취수율(%)	1년 동안 측정할 이용 가능한 수자원 중 이용량(유지 용수량 제외) 비율	(이용량(유지 용수량 제외)/이용 가능 수자원량)*100
수량	(사용량 기준) 1인 1일 물 소비량 (l/인/일)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	상수 급수량/전국 인구
	물 재이용량 (톤/년/인)	하수처리수 재이용량, 중수도 이용량, 빗물 사용량 합계를 인구수로 나눈 값	당해 연도(하수처리수 재이용량+중수도 이용량+빗물 이용량)/인구수
수질	4대강 수질오염도 (mg/l)	4대강 상수원의 BOD, T-P 평균 측정 농도 (발전, 물금, 대청, 주암)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군 지역 인구 중 하수처리구역 내의 인구 비율	(하수처리 군지역 인구/총 군지역 인구)*100
생태계	자연보호지역 비율(%)	국토 면적 중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비율	(자연환경보호지역 면적/국토 면적)*100
	국가 생물종 목록 수 (종)	우리나라에서 존재가 확인된 생물종 수	
	멸종위기종 수 (종)	야생 동식물 중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수	

자료: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8), 2018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pp. 21-116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 3) 경제 분야

〈부표 4〉 경제 분야 평가지표

분류	지표명 (단위)	지표 정의	산정 방법
경제 이행	국내총생산(GDP) (조원)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1년 동안에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순가치 합계	
	1인당 GDP(달러)	현재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 연간 GDP를 인구로 나눈 값	GDP/국민 인구
	경제성장률(%)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연간 증가율	{(금년도 불변 GDP-전년도 불변 GDP)*100}
	GDP 대비 순투자율(%)	GDP 대비 총생산자본 형성 비율(불변가격 기준). 총생산자본 형성은 총생산량과 관련된 순투자자를 측정	(총투자/국민 총처분가능소득)*100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율(%)	전체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부가한 가치 중 중소기업이 부가한 가치 비율	(중소기업 제조업 부가가치/전체 제조업 부가가치)*100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비 금액의 변동	
무역	무역수지(백만 달러)	일정 기간의 수출입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일국의 외국과의 대금 수불액	상품 및 서비스 부문의 수출액-수입액
재정 상태	조세부담률(%)	경상 GDP에서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표현된 국민들의 조세 부담 정도	{세금(국세+지방세)/당해 연도 경상 GDP}*100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	(국가채무/GDP)*100
대외 원조	GNI 대비 ODA 비율(%)	GNI 대비 공여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ODA 비율	(당해 연도 ODA 지원 금액/GNI)*100

분류	지표명 (단위)	지표 정의	산정 방법
에너지 사용	1인당 에너지 소비량(toc/인)	1차 에너지 소비량 <sup>10)</sup> 을 인구수로 나눈 값	1차 에너지 소비량/인구수
	신재생에너지 <sup>11)</sup> 공급 비중(%)	총 1차 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신재생에너지 공급량/1차 에너지 공급량)*100
폐기물 관리	에너지 원 단위(toc/백만 원)	국가별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로, 산업 부문별 에너지 소비 효율성, 산업구조의 환경친화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당해 연도 1차 에너지 소비량/GDP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ton/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총발생량을 일 단위로 나누어 측정함 값	당해 연도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일반, 건설폐기물의 총발생량/365일
	지정폐기물 발생량(ton/일)	지정폐기물 <sup>12)</sup> 의 총발생량을 일 단위로 측정함 값	당해 연도 지정폐기물 총발생량/365일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200L 환산 드림)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교통	폐기물 재활용률(%)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재활용으로 처리되는 비율	(폐기물 재활용 처리량/전체 폐기물 발생량)*100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대중교통수단(시내버스, 지하철)이 차지하는 수송 분담을 나타내는 비율	(대도시권 버스+지하철 수송량)/대도시권 여객 수송량*100
	자전거도로 총연장(km)	전국 자전거도로의 길이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자전거·자전거 겸용 도로를 포함)	시·도별 자전거도로 연장의 합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대수(대)	자동차등록부에 등록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등록 대수	

10) 에너지의 국내 생산 및 수입, 재고의 증감을 포함하며, 최종 에너지 소비와 전환 손실을 합한 양과 같음.  
 11) 재생에너지: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8개 분야).  
 신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수소에너지(3개 분야).

분류	지표명 (단위)	지표 정의	산정 방법
정보화 등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천 명)	1998년 초고속 인터넷 도입 이후 국내 통신사의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한 사람	
	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 종류 (건)	인터넷을 이용해 행정안전부의 민원24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민원 수	
	GDP 대비 R&D 지출 비율	연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사용된 총연구개발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연구개발 투자비/GDP)*100

자료: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8), 2018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pp. 21-116의 내용을 바탕으로 표 작성.

12)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 간행물 회원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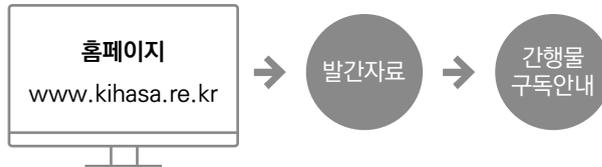
###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 가입방법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